

## 익명적 화폐 - 관점들의 교환과 타자성의 사슬\*

이길호\*\*

### I. 서론: 익명 네트워크

인터넷에 기반한 새로운 교환 형태가 작동하고 있다. P2P에서부터 Tor 네트워크,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에 이르기까지, 이미 낯설지 않은, 그러나 여전히 친숙한 것만은 아닌 교환들의 양태가 사람들의 일상과 접촉해 있다. 그리고 그 현실적 작동 속에 실질적 효과를 산출한다. 이제까지 그것은 주로 ‘암호화’의 기술적 조건의 틀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 글은 ‘익명화’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현상에 접근한다. 양자는 비슷해 보이더라도 혼동될 수 없는 의미 차원을 지시한다. 암호화는 외부 관찰자로부터 내부 참여자의 식별을 차단하는 기제가 된다는 점에서 익명화의 한 조건이지만, 그것이 지향하는 익명화는 암호화로 전부 환원되지 않는 차이들을 발현하며 다시 자기 고유의 조건을

---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1046094).

\*\*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강사

갖는 까닭이다.

예컨대, 익명 네트워크인 Tor는 데이터 자체의 암호화보다 이를 교환하는 노드의 분산 분할 및 중첩의 상황들, 해당 존재 형태가 산출하는 내재적 식별 불가능성을 조건으로 작동한다. 기존 네트워크와 호환되지 않는 타(alter)-체계를 구축한 채로, 그것은 사이버공간의 ‘숨겨진’ 부분을 이룬다(이길호, 2021). 즉, 기존 체계의 관점에서 비체계성으로 보이지만 단지 그에 머물지 않고 바로 그 비체계성을 또 다른 ‘체계’의 조건으로 삼는 운동이 관측된다. 딥 웹(Deep Web)이라고도 불리는 그 “심층”은 일반 검색엔진 및 웹 브라우저를 통해 검색과 접속이 불가하며, 그것의 크기는 “표면”(검색·접근 가능한 웹 공간)에 비해 500배가량 큰 것으로 추정됐다(Bergman, 2001). 존재 형태의 차원에서, “심층” 웹은 “표면” 웹만큼이나 실재적이며 현실적이다. 동시에 그것은 표면 ‘아래’ 숨겨져 있으므로(숨겨짐으로써 작동하기 때문에) 앞의 대상으로 쉽게 구성되지 않는다. 익숙한 명명 체계와 분리되어 호스트 네임을 통해 존재를 알기도 어렵거니와, IP주소에 따른 위치 식별에서 비껴난다. 명명함으로써 지식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존재한다고 그 이름을 아는 것에 대해—명명 가능성을 무화시켜 ‘있는지 모르게’ 하는 것이다. 지식 체계로 식별되지 않게끔 명명의 대상에서 숨기는 익명화는 일종의 반체계적 작동이 된다.

웹 공간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것이 이런 비가시적 ‘암흑’이라면, 현존하는 전역 네트워크의 구조와 성격을 규정하는 것도 가시적 ‘표면’이 아니라 그 익명의 부분들일 수 있다. 그럼에도 그것은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대중적 활용 밖에 놓여 있다는 인상 탓에, 또한 구성주의적 인식을 초과하는 특이성으로 인해 네트워크 연구에서 마치 ‘없는’ 것처럼 배제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런 익명적 연결들은 일상성 가운데 이미 깊이 들어와 있다. 이를 연구 관심으로 삼는 까닭도 그것이 현실적 교환 상황들로 연결되는 개입의 사실 때문이다. 익명적 교환 흐름에서 결절돼 대중적 흐름으로 진입하는 ‘이상한’ 사물들은 증여자가 식별되지 않거나 알려진 교환 형태를 변형하면서, 법적·경제적 재현 테두리를 초과한다. 관찰 가능한 양상은 식별 불가능한 실재와 분리접속

의 관계를 이룬 채, 부분적으로 교차 중첩한다.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 기반 화폐 역시 어떤 익명의 네트워크로 순환하며, 이런 의미로는 ‘익명화폐’에 가깝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이 식별 체계를 벗어나 있는 까닭은 제3자의 중개를 상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교환되기 때문이다. 전자화폐는 비트코인 이전에도 있었으나, 디지털 사물의 복제 가능성에 따른 이중지불(double spending) 문제에 대응하려면 여전히 신뢰할 만한 중앙의 거래보증이 필요했다. 이는 거래비용의 증대라는 부담을 수반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정부나 은행 같은 기관이 ‘매개자’로 개입하는 수단은 신원정보(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의 수집·식별이다. 거래 보증 체계는 개인 식별 체계에 기반해 있으며, 전자상거래를 어떤 면에서 더욱 중앙 의존적이게 한다. 비트코인의 출현은 이 배치를 얼마간 바꿔놓았는데 — 적어도 그런 메커니즘을 의도한다 — 외재적 매개항의 보증 관리 없이 작동하는 분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화폐는 “디지털 서명의 체인”(Nakamoto, 2008, 2)으로 정의되며, 이런 연쇄 시퀀스가 다중 블록을 이루어 ‘익명적으로’ 교환된다.

비트코인의 익명성은 화폐를 (재)정의하는 관점, 국가은행의 장부에 기입될 수 있는 것이 아닌 형태의 ‘서명 시술’을 작동시키는 알고리즘과 그 교환 체계의 정립에 기반을 둔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화폐라는 대상’이 아닌 ‘교환의 사실’ 자체를 교환하는, 즉 현재의 개별 교환이 앞선 교환들의 중첩이자 이후 중첩될 교환들의 분산이라는 사실관계를 내포하게끔 시공간적 다수 연쇄 고리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주된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도 이 부분인데,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는 단지 암호화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관계들의 교환’이라는 확장된 의미 차원에 우리를 접속시킨다. 더욱이 그것이 익명적이라면, 그 ‘익명’과 ‘교환’의 결합태에서 ‘익명적 교환’의 (변)형태를 탐구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는 공학적인 접근만으로 찾을 수 있는 답은 아니다. 또한 사용자 경험이나 사회적 감정(투기와 쏠림), 또는 법률적 규제의 차원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부 해소되고 마는 일도 아닐 것이다.<sup>1)</sup> 지금

의 익명적 상황은 교환에 관한 관점의 변형을 요한다.

Tor나 비트코인 등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상정되는 관점 가운데 하나는 그것을 일정하게 개체화/전체화하는 것이다. 기술·공학적 분석 외에 인문·사회적 분석이 많지 않기도 하지만, 이 같은 경향은 양 분과영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통적 대상 인식과 재현 틀로 수렴하는 면이 있다. 공학적 접근은 주로 내부 코드화에 집중하면서(Antonopoulos, 2017; Dingledine, et al. 2004) 외부 교환관계로부터 분리된 개별 메커니즘으로 이를 재현하는 반면, 사회적 접근은 국가·은행 등 외부 관계들로부터 분리하는 공학적 담론에 대해 그 ‘사회적’ 속성을 재부각시키는 편이지만(Campbell-Verduyn, ed. 2018; Dodd, 2014) 그럼으로써 전체 사회관계의 재생산적 구성향으로 재현한다.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분리와 ‘공학적’ 관계로부터의 분리라는 개체화는 서로 가리키는 방향은 다르면서도 하나의 동일한 인식 범주를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프레임은 이중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익명적 교환의 메커니즘은 사회적 담론의 관심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거나, 아니면 기존 교환 관념에 포섭되면서 ‘비익명적’ 향으로 재구성된다.

이 글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면서 가상적으로 숨겨진 —동시에 현행 구조와 행위의 장 안으로 개입하는— 익명적 교환의 네트워크에 관해, 개체론적 인식이 일부 설명의 한계를 보인다는 관점에서 시작한다. 이는 학제 간 해석의 차이를 보완해 간극을 메우거나 그 융합의 수행으로 해소되는 것이기 이전에, 관계적 존재 형태에 관한 관점들의 교환에 연결돼 있다. 내부(공학적) 관계와 외부(사회적) 관계를 ‘있는’ 인식론적 설명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

1) 블록체인의 작동 원리에 관해서는 이미 꽤 알려져 있는 편이지만,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그 온전한 함의를 고려하려는 논의는 드문 것처럼 보인다.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에 관한 기존 논의들은 명백한 이유로 이런 문제들이 법률적·정책적 대상의 측면에서(김홍기, 2014) 또는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권창규, 2021; 이병태, 2018),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토대의 차원에서(이항우, 2018) 어떻게 틀 지어지는지 살피는 경향이 있다. 이 글은 익명적 상황의 조건 및 발생을 교환 형태 및 내용과의 관계로 살피면서 기존 범주들에 변형을 일으키는 부분에 초점을 두며, 나아가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현상이 익명적 교환의 작동과 내재적으로 접속해 있음을 보이려 한다.

분류 틀 자체가 이미 대상을 개체화/전체화함으로써 도출된 구분이며 실제 양태는 내부/외부의 경계 재현을 벗어나거나 다른 관계성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보이려는 것이다. 익명성은 식별 체계에서 공제됨으로써 통제·재현 대상으로 수렴되기 힘든 한편, 바로 그런 인식의 한계를 유발하도록(체계에 대해 ‘비체계적으로’ 존재하도록) 작동하기 때문이다. 내/외부의 비호환성은 해당 구도를 도치하는 형태로 내포되면서, 상정된 구분을 무화하고 변형한다. 익명 네트워크는 동일한 개체/전체로 재현되기보다 다중의 “부분적 연결들”(Strathern, 2004)로 발현된다는 것이 글의 논지다. 그 독특한 연결 형태는 상품관계적 이데올로기에 토대를 두는 교환 담론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지점들을 남긴다.

따라서 존재하지만 식별 불가능한 익명적 부분들을 일반화된 재현으로 덧씌울 것이 아니라, 이중으로 숨겨진(기존 체계에서 공제됨으로써 개입하는) 차이화의 형태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 지금의 그 ‘다른’ 관계성은 구체적으로 “선물·교환(gift-exchange)”의 독특한 형식과 또한 부분적 연결을 이룬다는 것이 논지의 주요 갈래가 된다. 인류학자들의 지속적 연구 관심이 되어온 선물·교환은 거래적 호혜와 작동상 미묘하게 구분되며, 이 ‘같지만 다른’ 관계성은 일반의미의 호혜나 증여 어느 한쪽으로 온전히 환원되지 않는 타자성을 보인다. (일방적 증여로서의) ‘선물’과 (호혜성으로서의) ‘교환’이라는 비호환적 범주들에 대해, ‘선물이면서 또한 교환’이게 하는 변형은 선물·교환의 구조를 고유한 조건과의 관계로 위치시킨다. 그리고 이 특이성은 익명 네트워크의 교환 및 존재 형태에 부분적으로 중첩한다.

여기서 ‘선물’이라는 개념은 상품교환적 해석에 정향된 현대 사회과학에서(일정 부분 대중 담론에서도 마찬가지로) 흔히 상정되는 용법과 포개지지 않는 ‘낯선’ 범주다. 교환에 관한 담론공간에서 선물·교환의 자리는 기존 네트워크 이론에서 익명적 연결성이 틈입하는 자리와 상동적 관계를 보인다고 말할 수도 있다. 예컨대, 선물에 관한 논의는 변별적 속성과 대상적 범주화를 둘러싸고 주로 호혜성의 의미 차원으로 다루어지거나, 상품 기반 사회의 관점

에서 ‘비상품으로서의 선물’이라는 일반화된 인식 틀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선물-교환을 멜라네시아 등 비서구권(비상품 기반 사회)의 관습과 전통으로만 다루는 경향 속에, 심지어 전근대성의 패러다임으로 재현하는 이론적 가정들 속에 끈질기게 들러붙어 있는 프레임이다. 그에 수반되는 맹목성과 단순성은 인류학자들에게 철저히 비판받아 왔다. 상품거래와 소유권의 관념에 지배되는 문화는 특정 방식으로 해당 관념의 부재를 상상할 수 있을 뿐이며(Strathern, 1988, 18), 이 같은 일방향적 재현 구도에서 선물과 상품의 구별 짓기는 어디까지나 상품적 속성과의 비교를 통해 —소유와 그것의 이전(계약), 교환가치, 효용 등의 용어를 차용해— 전자를 후자의 하위범주로 포위하고 위계화하는 방식이기 쉽다. 이런 유형화, 사실상의 동류화는 선물-교환을 사회조직화와 원초적 생산양식(또는 등가성의 초기형태)의 차원에 묶어두는 가운데, 오래된 사회계약적 가설을 입증하는 재료로 전유하거나 ‘사회’의 생산을 위한 기능적 자리로 구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물의 관점에서, 상품과 선물의 대조는 이와 비대칭적인 접촉을 이룬다(Viveiros de Castro, 2014; 이길호, 2023 참조).

이 글은 인터넷 기반 연구에서 상당 부분 숨겨지고 배제된 익명 네트워크의 존재를 가시화함에 있어 이미 얼마간 알려진 선물-교환 형식과의 구조적 중첩을 규명함으로써, 익명 네트워크 연구를 위한 하나의 개념적 경로를 제안할 것이다. 익명 네트워크는 ‘익명적이라서’ 모호한 대상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교환 형식의 분석을 통해 정당한 연구 가능성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선물-교환의 형태와 내용, 발생 조건을 명확히 드러내는 일이 선행적으로 요구된다. 지금의 작업은 선물-교환이 호혜성의 일반원리로 모두 설명되거나 단지 비시장적 교환양식으로 한정된다기보다, 어떤 사건적 조건들 속에서 지금 여기의 교환 상황들에 현실적으로 교차하는 개입의 형식이 된다는 점을 밝힌다.

다음으로, 그러한 탐색을 통해 익명 네트워크의 교환관계를 기존 네트워크와의 차이와 변형의 구체적 절차들로 살필 것이다. 익명적 교환은 단지 익

속한 교환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익명’과 ‘교환’ 양자 모두의 의미를 재고하게 한다. ‘익명-교환’을 선물-교환의 변형태로 접근하는 일은 이를 가능케 하는 하나의 진입점이 되는데,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인식 범주 밖으로 빠져나갔던 부분을 (재)기술할 언어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내부 알고리즘을 해석하는 것만으로, 또한 거래관계를 재현하는 것으로 포착되지 않는 다른 관계성을 기술하기 위해, 지금의 글은 이전 연구에서 도입한 “익명적 연결들(anon-connections)”(이길호, 2023) 및 “익명적 교환(anon-exchange)”(이길호, 2020)이라는 용어를 얼마간 참조한다. 이는 전통적 의미의 연결성이나 교환과 다르지만 비연결이나 비교환으로 환원될 수도 없는 공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는 이를 “이마-변형(ex-change)”인 교환 흐름으로서 “익명적 화폐(anon-currency)”라는 개념으로 확장 변형할 것이다.

본 연구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주목하는 이유는 인식론상의 사회적-공학 적 속성보다도 비트코인 또는 블록체인이 그 자체로 익명적 교환의 작동망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그것은 익명 네트워크 연구의 ‘필드’이자 조사 가능한 ‘장소’가 된다. 이어지는 장들에서는 비트코인의 경우를 통해 익명적 상황과 교환 상황이 선물-교환 형식으로 교차하는 평면에 초점을 맞추며, 크게 다음의 세 단계로 접근한다. 먼저 2장에서는, 비트코인 교환의 ‘기본구조’들을 드러내고 그것이 기존 거래관계와 분기하는 지점을 살핀다. 이는 소유 상태의 불확정성을 조건으로 하는 교환 형태가 작동 중임을 보여준다. 외부 거시 스케일로 식별할 수 없는(그저 ‘거래관계’로만 관찰될) 이런 내재적 차이화의 의미 차원을 기술하기 위해, 3장에서는 거래-교환과 비평형적 간극을 보이는 선물-교환의 논리-실천 형식을 참조한다. 선물과 교환의 분리접속적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 특히 모스(M. Mauss)와 레비스트로스(C. Lévi-Strauss)의 관점을 재독해하면서 교환의 비평형성에 관한 논점들을 검토하고, 선물-교환의 확장적 재정의(‘관점들의 교환’)에 이르는 경로를 탐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블록체인이 관점들의 교환을 불러들이는 자리에 주목하며, 이를 ‘타자성의 시술’이라는 형상으로 구체화한다. 소유-계약의 범주로 재현되지 않는

‘익명-화폐’의 다중성은 그것의 역설적 효과를 통해, 기존 화폐 체계에서 빠져 나가는 반(反/半)체계적 변형을 가시화한다.

## II. 비트코인 교환의 기본구조: “주면서보존하기”

Tor 네트워크와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교환의 대상이나 장르가 이질적인 듯 보여도 작동상의 동질성(익명화 지향)을 공유한다. 양자 모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명명 체계로부터 참여자가 식별되지 않으면서도 교환이 유효한 것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이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데이터 교환의 참여자들이 식별 가능한 개인이나 개체적(individual) 양태로 있지 않고 개별의 다중집합(multiset)들로 존재하게끔 분할시키는 형태다. 이 같은 작동망 속에서 실제 교환되는 것의 내용 역시 ‘개체들’이라기보다 이전-이후의 ‘관계들’이 된다. 즉, 교환의 형태와 내용 모두 분할적 관계들이다. 선행하는 관계에 개별자는 분할적 양태로 참여하면서, 분할적 양태를 교환하는 것이다. 이로써 지금의 교환 상황을 ‘익명으로’ 변형한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이런 방식의 익명적 교환으로 현실화한다면, 교환 참여자들이 대상의 소유관계로 외부에서 식별되는 것을 얼마간 차단한 채 중여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된다. 이는 소유 및 계약(소유의 이전)에 관한 사정으로부터 묶이지 않는 다른 교환의 가능성 형태를 상기시킨다. 물론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유효하려면 ‘거래’의 수단이자 구매력의 징표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무언가의 구매 대금이나 일정 금액의 송금을 위한 기능이라는 면에서 어디까지나 상품교환의 요소로 있다. 그러나 그것이 상대에게 전달되는 내적 작동의 알고리즘 속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기존 거래 형식을 벗어나는 변형태로 작동하고 있다. 즉, 그것은 거래-교환의 한복판에 다른 교환(“서명들의 연쇄”)의 형상을 중첩시킨다.

이 같은 관점 아래, 우선 이 장에서는 비트코인 교환의 기본구조들의 열개



만을 제시할 것이다. 그것의 온전한 함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언급했듯이 몇 가지 중간 경로들을 거쳐야 하며, 이를 경유해 4장에서 재론할 것이다. 지금의 기본구조들은 블록체인이 타자성의 사슬로 작동함에 있어 특정 형태의 연결성을 미리 형상화하거나 예기(prescription)하는 시스템(트랜잭션, UTXO)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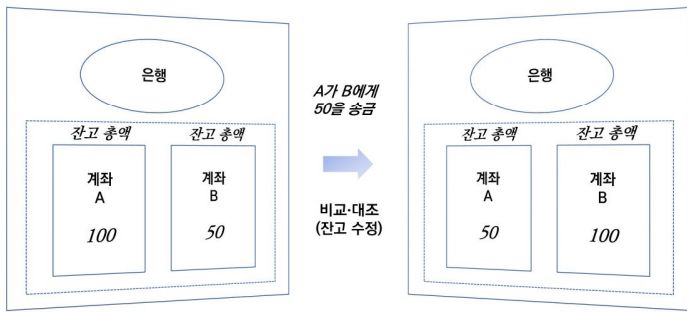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동등한 노드(node)들의 참여 가운데 개별 노드가 자신의 참여 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에 기반한 작동망이다. 이것의 구체적 의미에 관해서는 글에서 계속 다루겠지만,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관련 용어를 간략히 정리해 두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노드는 데이터 교환의 연결망 상에서의 분기점이자, 교환에 따른 상태 변화가 전송되는(증여-수령-재증여) 경로들의 마디를 표현한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교환의 사실은 별도의 중앙 서버에 기록·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 노드에 분산·공유된다. 이런 분산적 공유 형태는 ‘트랜잭션(transaction)’이라 불리는 작동 단위의 실행에서부터 확인된다.

전산 분야에서 트랜잭션은 데이터 처리의 기본구조를 말한다. 예를 들어 A가 B에 1BTC를 주고 B가 1BTC를 받았다면 A의 증여와 B의 수령(受領)은 별개로 분리될 수 없는 최소단위를 이룬다. A가 증여했으나 B가 수령하지 못하면 트랜잭션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즉, 증여와 수령은 언제나 짝으로 존재하며, 또한 증여/수령의 ‘자리’를 차이로 하는 짝집합으로 존재해야 한다. A에서 B로 가는(A→B) 증여/수령의 사실과 B에서 A로 가는(B→A) 증여/수령의 사실은 서로 동일한 짝으로 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sup>2)</sup> 결국 A가 B에게 얼마를 주고 B가 받았다는 사실관계가 하나의 트랜잭션이 되며,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A 또는 B가 아니라 이 증여/수령 관계의 결레(<A, B>)와 그것들의

2) 이렇게 자리의 차이에 따라 ‘순서 지어진’ 짝집합을 순서쌍(ordered pair) 또는 2-튜플(2-tuple)이라 부른다. 집합 {A, B}와 구분해 <A, B>나 (A, B)로 쓴다. 전자는 항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가 상정되지 않으므로 {A, B}와 {B, A}가 동일 집합이지만, 후자는 <A, B>와 <B, A>가 (A≠B인 한) 다른 연결성으로 <A, B>≠<B, A> 차이화한다. 이런 정렬된 짝집합의 존재양태는 상업적 용법의 ‘거래’와 온전히 포개지지 않는 면이 있으며 “트랜잭션”이라는 표기로 구분한다.

엮힌 집합을 교환의 내용으로 한다.

이것은 거래 당사자로서의 개인이 특정 계정의 이름으로 재현되는 전통적 모델과 구분된다. 기존 금융체계에서 A로부터 B로의 송금은 A와 B 양자의 은행 계좌를 확인하고 그 잔고 총액(소유 상태)을 비교·대조해 각각의 잔고를 수정하는(소유의 이전) 형태다. 이는 A와 B를 계좌 정보로 식별함을 통해 거래 내역을 매개·보증하는 절차로 실현된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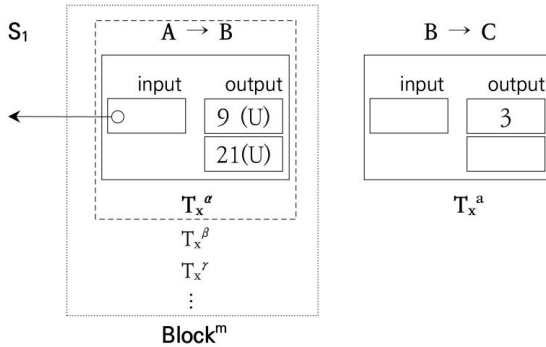


[그림 1] 중개 모델: 식별 체계로서의 거래

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소유자의 계정이나 잔고가 아니라 각각의 증여 사실들만을 모두 트랜잭션으로서 기록한다. 정확히는, 어느 증여/수령 이벤트를 통해 그 결과들을 ‘소유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잠재태들로 존재하게 한다. “UTXO(Unspent Transaction Output: 미사용 트랜잭션 출력값)”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지금의 교환 상황을 기존 거래와 분리되는 다중성(multiplicity)의 네트워크로 만든다. A가 B에게 9BTC를 주고 B가 C에게 3BTC를 주었다면, ‘장부’ 상에 실제 기록되는 내용은 A, B, C의 잔고 총액이 아니라 <A, B>의 트랜잭션에 따른 출력값(9)이 <B, C>의 트랜잭션에 따른 두 개의 새로운 출력값(3, 6)으로 분할되는 형태다. 즉, 9가 6으로 수정되는 게 아니라 9에서 3과 6의 UTXO가 재생성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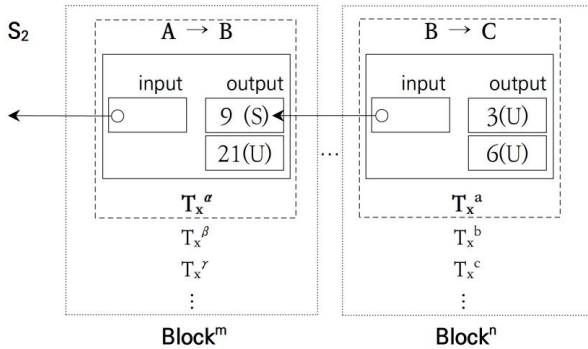
비트코인 교환은 수백만에 이르는 UTXO들의 집합체로 형상화될 수 있으

며, UTXO 집합은 새로운 UTXO가 생성·소진됨에 따라 팽창·수축을 반복한다(Antonopoulos, 2017, 119). 모든 트랜잭션은 UTXO 집합의 ‘변형’을 표상하게 된다. 여기에는 다시 두 개의 절차가 개입한다. 우선, <B, C>의 출력값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가상적 차이로만 있다[그림 2].



[그림 2] UTXO 집합

B가 C에게 증여하는 두 번째 사건  $T_x^a$ 에서, B는 자신의 ‘잔고 총액’으로 재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해당 개념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 B의 입력값(input) 부분에는 실제 잔고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C로의 증여를 가능하게 한 이전 증여(즉, A가 B에 증여한 9BTC)에 대하여 B의 ‘소유’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B는 자신이 수령했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은(증여하지 않은) UTXO에 한해서만 다시 증여할 수 있고, 이를 C에 증여할 때 비로소 해당 소유를 거꾸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이 증명 절차는 4장에서 상술한다). <B, C>의 증여/수령 사실( $T_x^a$ )을 네트워크상 제3의 노드들이 수신하면, 바로 그때 B의 인풋이 가리키는 앞선 <A, B>의 증여/수령 사실( $T_x^\alpha$ )을 참조해 연결하는 형태다[그림 3].



[그림 3] 트랜잭션 체인과 블록체인

(편의상 수수료는 없다고 가정.  $m < n$ )

트랜잭션이 상호 얽힘으로 중첩하는 절차에서 B의 ‘소유’가 소급적으로 확인된다. B→C의 다음 증여를 통해 앞선 출력값이 미지출(U)에서 지출(S) 상태로 변형한다.

이렇게 <B, C>의 증여/수령이 사건적 결합의 양태를 띠고, 이것이 앞선 <A, B>의 사건을 자신의 ‘조건’으로 소급해서 생산해 내는 양상이 된다. 이때 <A, B> 역시 그에 선행하는 다른 사건들과의 참조를 통해 이미 ‘블록’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서로 다른 증여 집합들( $T_x^a, T_x^b, T_x^c, \dots$ )이 개별 블록을 이루고(Block<sup>m</sup>), 동시에 또 다른 블록들로(Block<sup>l</sup>, Block<sup>n</sup>, ...) 부분적인 연결을 이루는 연쇄 시퀀스가 작동하게 된다. 여기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교환을 기존 형태와의 차이로 이해하는 첫 번째 분기점이 드러난다. 즉, 그것은 모든 증여를 ‘아직-증여하지-않은-수령’의 범주로 변형하는 한편, ‘이후-증여할-이전-수령’의 개념으로 도치한다. 이로써 교환 단위를 2자관계가 아닌 3자관계로 확장하고 있다.

소유가 다음 증여를 통해서(만) 확인되게 하는 지금의 구조는 와이너(Weiner, 1992)가 말한 “주면서-보존하기(keeping-while-giving)”의 역설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변형한다. 당장은 형태상의 유비이지만, 논의의 시작을 위해 우선 이 부분을 도입점으로 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구조적 교차에 관한 논의는 다음 장들에서 이어진다. 이 개념은 원래 멜라네시아에서 사물의 교환을 설명할

때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난국과 관련 있다. 거기서 ‘교환되는’ 것은 모스(Mauss, 1925)가 “부동신(immeuble)”이라 칭한 움직일 수 없는 사물의 범주라는 역설 말이다. 현지인의 관점에서 ‘교환’의 핵심에 놓여 있는 것은 이 부동의 사물(“taonga”)이며, “동신(meuble)”으로 범주화되는 사물(“oloa”)은 그들에게서 ‘교환’되는 것이 아니거나 다른 식으로 교환되어야 한다. 이 양립 불가능성을 해소하는 길은 이곳에서 ‘교환’의 의미 차원을 우리에게 익숙한 범주로 쉽사리 덮어 씌우지 않는 것이다.

각각은 다른 형태와 내용으로 실천된다. 전자에 속하는 사물(의례용 돗자리, 구리동판, 조개장식물 등)<sup>3)</sup>은 ‘선물로서’(만) 교환된다. 후자에 해당하는 음식이나 도구, 소비재 등의 생계품은 물물교환으로서 ‘거래’된다. 전자는 판매되거나 양도된다기보다 증여를 통해 자신의 ‘소유’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형태의 ‘교환’이며, 소유가 이양되는 교환(거래)과 분리된다. 이 주면서-보존하는 교환의 역동성에 주목하면서, 와이너는 사물로부터 ‘소외될 수 없는’ 증여의 독특한 양식이 존재함을 밝힌다. 블록체인 교환은 “양도 불가능한(inalienable) 소유”와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그 내재적 작동상에서 교차하는 지점을 보인다. 증여의 사실을 통해 소유를 이전 수령의 사실로 소급하는 ‘교환’의 특이성은 트랜잭션 구조와 UTXO 개념이 마련하는 조건으로 실행된다. 모든 증여물은 이전 증여자와의 관계를 온전히 함축하는 가운데, 그 관계적

---

3) 이 사물들은 흔히 ‘위신재’나 ‘가치재’ 등으로 통칭되는 것들이지만, 실제로 그 의미 차원은 좀 더 복잡하다. 여기서 상세한 논의를 진행할 수는 없지만, 제기되는 질문의 핵심은 왜 사물의 범주가 이런 식으로 나뉘며 ‘운동 불가능한’ 사물로 범주화되는 것이 운동(교환)의 주체로 설정되어야 하는가이다. 더욱이 그런 분류의 용법들이 우리의 것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위세, 가치, 교환 등의 개념뿐 아니라 사물/사람의 범주 자체까지도 말이다. 이 지점에서 스트래선(Strathern, 1988)의 제안은 ‘타자’로서의 가능성 세계, 다시 말해 우리의 설명 모델에서 ‘이해 불가능한 정도’로서의 타자성에 진지하게 대면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낯선 데이터를 익숙한 분석 범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형상을 통해 익숙한 범주를 변형하는 문제다. 이때의 타자성은 기존 체계의 모델이 ‘모델링하지 못하는 정도’로서의 강도(強度)적 차이화를 말하며, 그런 차원에서 가시화되는 반/역-형상(counter-figure)이다(이길호, 2023 참조). 본문에서 타-체계, 타-연결, 타-교환 등으로 표현되는 것 역시 기본적으로 이런 관점에 닿아 있으며, 체계, 연결, 교환 자체의 의미 변형을 얼마간 내포하는 용어들이다.

중첩의 ‘계보’를 가상의 몸체에 각인하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 가상적 집합군(UTXO set)은 동일성 재현을 둘로 나눈다. 즉, 교환의 참여 단위를 기존 체계의 재현과 다른 형식으로 분리함으로써 존재 형태의 내적 분할과 관계한다. 이는 두 번째 분기점을 이룬다. A와 B로부터 각각 5BTC와 2BTC를 C가 받는다면, C는 7BTC라는 하나의 동일한 ‘계정 잔고’로 재현되는 대신 5BTC와 2BTC라는 각기 다른 UTXO 집합들로 나뉜다. 또한 트랜잭션마다 원칙적으로 다른 ‘주소’들을 생성해 진행되기 때문에, 예컨대  $A_2$  주소에서 수령한  $C_1$  주소의 5BTC와  $B_5$  주소에서 수령한  $C_2$  주소의 2BTC 같은 식으로 쪼개져 있다. 이로써  $A_2C_1$ ,  $B_5C_2$  등의 짝결합들(만)이 존재하게 된다. 기존 거래 시스템과 달리 교환관계의 생성을 위해  $C_1$ ,  $C_2$  등의 ‘부분들’이 C라는 ‘전체’ 또는 ‘개체’의 동일성으로 썸해지지 않으며, 그렇더라도 작동한다.

블록체인 교환을 차이화하는 지금의 두 가지 분기점은 교환 형태와 존재 형태의 상호전제적 관계를 드러낸다. 동일자가 동일자와 동일 항을 주고받는 교환이 아니라, 이전-이후의 변형이 일정하게 선행하면서 교차적인 연결태들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그 교차배열에 참여자(증여자/수령자)는 분할된 다중 집합들로 진입하고, 따라서 자기 동일성에 기반한 식별 체계를 벗어나(당사자의 정체성 재현을 회피하면서) ‘익명적인’ 양태로 존재하게 된다.

교환을 ‘주면서-보존하기’의 역설적 열개로 드러내는 이런 익명적-가상적 결연체(affinité)의 형상을 살피기 위해, 인류학자에게 친숙한 ‘선물-교환’의 작동 형태로부터 접근해 볼 수 있다. 익숙한 주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선물-교환에 관한 수많은 논점들은 아직 최종적인 답이 주어지지 않은 채, 단지 ‘익숙해진 낯성’의 차원으로 남겨진 면이 있다. 선물-교환의 특이성에 천착하며 이해를 확장하는 일은 우리를 낯선 지평에 다다르게 하는데, 등가교환의 초기형태를 발굴하는 토양이 된다거나 비교환을 표상하는 영역이라서가 아니라, 선물-교환의 구조에 ‘항상 그리고 이미’ 내재해 있는 타자성을 통해 교환 개념 자체의 타자성(등가교환도 비교환도 아닌 비평형적 차이 형식)에 조응하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의 익명-교환이

선물-교환 형식과 중첩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 III. “관계들의 세계”: 선물-교환 형식의 확장변형

이하에서 논할 내용은 선물에 관한 기본이론들의 재검토를 통해 교환을 추동하는 힘으로서 분석의 공통된 초점이 되었던 인류학적 범주를 재고하는 것이다.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적 교환이론을 거쳐 해당 범주가 모든 증여를 이미 답례의 형식으로 변형하는 기표로 등장하는 지점에 특히 주목할 수 있는데, 그 떠다니는 기표(floating signifier)는 호혜성의 특수형식(지연된 호혜)으로서의 선물-교환을 ‘내재적 타자성’의 개입이라는 교환 단위의 확장으로 통과시키는 변곡점이기 때문이다. 이는 2자관계적 물물교환이나 거래와 여전히 구별되면서도, 선물을 일반교환형식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받은 물건을 “간직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선물은 그 사회적 몸체를 언제나 떠다니게 된다. 이때의 선물-교환은 등가성의 원리보다 다른 한편의 적대와 투기(鬪技), 무엇보다 금기와 의무에 기초해 있으며, 증여-답례의 항상적 교환 상태를 산출한다. 이런 교환관계는 마치 누군가의 ‘소득’이 직접적 ‘이윤’으로 전유되는 상황을 제어하는 기제처럼 보일 수도 있다. 선물-교환이 지속될수록 그 차이화는 사회적 관계성뿐만 아니라 인간-비인간 관계성 또는 ‘사람(person)’의 범주화를 둘러싸고 재생산-강화된다.

이는 기존 해석 틀에서 주류를 이루는 호혜성 담론과 얼마간 차이를 이루는 한편으로, 교환형태의 문제를 경제양식을 넘어 존재양태의 차원에 연결시키는 관점을 축성한다. 와그너(Wagner, 1991)와 스트래선(Strathern, 1988), 겔(Gell, 1998)의 논의 등은 바로 이 존재양태와 교환형태의 상호전제적 관계와 관련해, 선물-교환의 존재론을 정립할 기반을 제시한다. 개인/사회 범주와 비평형적인 분할 가능한(dividual) 다수사람(person-multiple)이라는 개념화 경로는 선물-교환의 분석 틀을 현지 실천에 좀 더 가까운 형태로 번역하는 이론

적 함의를 담고 있다. 이는 선물-교환 형식을 “관점들의 교환”(Viveiros de Castro, 2004)으로 재정의하는 확장적 변형을 경우해, 주체의 내적 분할 또는 타자성의 내재성이라는 관계 사슬의 의미 차원과 재연결된다.

## 1. 비평형적 교환

앞서 언급했듯이, 선물과 교환에 관한 논의는 주로 상품 기반적 관점에서 틀 지어지면서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특정한 해석에 정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선물-교환에 관한 인류학자들의 논점은, 교환이란 무엇이며 거기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관한 타자의 가정이 우리 자신의 가정과 반드시 거울상을 이룬다고 전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양자는 상당히 다르다.

지금의 문제는 선물-교환의 특이성이 교환의 일반 관념 속으로 포섭되면서 차이의 주름들이 평탄해지는 사태와 관련 있을 것이다. 모스 이후 적잖은 논의가 선물(물물)교환이나 (상품)거래와 구별되는 주요 측면들에 주목했지만(Gregory, 1982; Munn, 1992; Weiner, 1992 등), 선물이 ‘선물-교환’과 구분되는 지점은 상대적으로 가려지고 망각됐다. 후자의 차이화는 개념적·실천적으로 더 핵심적일 수 있는데, 『증여론』(Mauss, 1925)의 테마도 결국 ‘선물이 교환이 되는 변형’ (“받은 물건에는 어떤 힘이 있기에 수령자가 답례하게 하는가?”, *ibid.*, 4)에 초점을 맞추고 전개되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증여가 호혜적이게 되는 변형은 선물이 여전히 선물인 채로(교환이 아닌 채로), ‘다른’ 형태의 교환이 되게 하는(거래가 아니게 하는) 개입의 문제다. 선물에 관한 이론들의 서문이 되는 라나이피리(T. Ranaipiri)의 진술은<sup>4)</sup> —“우리는 그것을 거래하지 않는다”<sup>5)</sup>— 선물과 상품

4) 마오리 현지인의 답문을 도래할 교환 답문들의 서문적 지위로 설정한 이는 모스 자신이다. 마오리의 “법률가”로 소개된 라나이피리는 “문제에 대한 핵심적 열쇠를 우리에게 가져다준다”(ibid., 14). 참고로, 모스의 두 저서(Mauss, 1902; 1925)에 대한 인용 면수는 영문 번역서 기준이며 학회 규정에 따라 원서 발행 연도로 표기한다.

5) “당신은 그것에 가격을 매기지 않은 채로 준다. 우리는 그에 대해 흥정하지 않는다”(ibid.). 이 같은 진술은 다음의 사실을 말해준다. 그들은 거래를 모르지 않으며, 단지 거래 대상과 증여되



의 구별에 관한 언설이기 이전에 타-교환의 생성을 조건으로 하는 명제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선물-교환의 탐구는 선물과 교환 사이에서 양자 모두에 타자성으로 개입하는(선물도 아니고, 교환도 아닌) 비식별 지대를 발견하는 일이며, 그로부터 교환의 다중성을 —교환과 (같지만 다른) ‘교환’의 비평형성을 — 가시화하는 일이다(이길호, 2020).<sup>6)</sup>

그 비평형은 상품교환적 의미로의 ‘교환주의’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다른 교환, 사회계약의 맥락으로 전부 환원될 수 없는 어떤 교환의 존재를 암시한다(Viveiros de Castro, 2014, 166 참조). 선물-교환은 그 밖의 교환과의 차이 형식으로 있으며, 그 자체가 차이(의 교환)이다. 그리고 차이는 제3자를 교환의 내재적 기본구조로 요청하는 관점에 있다. 선물-교환의 관점을 말하기 위해, 또한 이를 익숙한 관념으로 선불리 해석하기 이전에, 레비스트로스가 모스와의 차이와 교차를 동시에 드러내는 ‘하우(hau)’에 관한 이해로부터 시작해 보자. 그것은 『친족의 기본구조』(Lévi-Strauss, 1967)에서 전개된 호혜성 원리에 관한 설명의 근간이 될 뿐 아니라 『주술의 일반이론』(Mauss, 1902)에서 발견한 기표와 기의 간 불합치를 체계의 마나(mana)적 조건으로 삼는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사회의 상징적 기원”(Lévi-Strauss, 1950, XXII)으로서 그 “영속적 비평형”에 관한 레비스트로스의 명제를 교환 담론 속에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언제나 비평형이 주어져 있다”(Lévi-Strauss, 1966, 222). 이 시초적 비대칭은 위베르(H. Hubert)와 모스가 일찍이 간파한 “잠재적 차이”로서의 마나와 정확히 같은 자리에 배치된다. “그런 잠재성의 차이 덕분에 사물이 서로에게 작용할 수 있는 까닭이다. (...) 마나라는 관념은 잠재적 차이들이라는 관념과 전혀

---

는 사물이 다르다는 것이다.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알기에 하지 않는다는(교환의 비평형성을 엄격히 실천한다는) 사실관계는 선물-교환으로서 쿨라(kula)와 거래-교환으로서 김왈리(gimwali)의 내재적 관점 차이에 관한 말리노프스키(Malinowski, 1922)의 논의에서 일찌감치 확인된다.

6) 이 글에서 다루는 주제와 관점이나 관심의 초점이 다르지만, 테리다와 세르의 논의를 중심으로 호혜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선물(증여)의 다층적 성격을 조명하는 국내 문헌으로는 이승철(2019) 참조

다르지 않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주술(magic)이 기반하는 일반개념의 모든 것에 대면케 된다”(Mauss, 1902, 148-149).<sup>7)</sup> 이를 기표와 기의 사이 영속적 어긋남의 차원으로 접근했을 때, 레비스트로스는 교환의 근본 현상이 비평형으로서의 내재성의 평면(‘무의식’)에 자리한다는 생각에 도달한다. 주지하다시피, 사물과 존재의 차이적 가치로서(등가적 가치가 아니라) 마나는 그것의 교환주의적 변형(‘하우’)을 통과해 “떠다니는 기표”(Lévi-Strauss, 1950)의 개념을 예기한다.

떠다니는 기표가 가시화하는 것은 서로 다른 계열 사이 간극과, 그 관계적 차이를 역설적인(초월적이기보다 횡단적인) 개입의 선행 조건으로 삼는 운동이다. 차이(=마나)로서 무의식적 비평형의 자리는 교환 체계를 정립하는 조건이자 그 소급적 표현(교환이 있음)이 된다. 그리고 이는 교환을 단지 소유의 이전도, 사물의 양도나 효용의 전유도, 더욱이 의사소통의 문제만도 아닌, ‘관계들의 교환’이라는 형태로 재발견한다. “이때 사물이 나의 것인지 타자의 것인지는 애초의 관계적 성격에 비하면 부차적 문제다”(ibid, XLVI). 관계적 잠재화 또는 잠재적 차이의 강화를 조건으로 하는 관계들의 세계(monde des relations)(Lévi-Strauss, 1967, 553)에서, 중립적(비차이적) 관계, 사실상의 관계의 부재는 상정될 수 없다. 말하자면, “언제나 비평형[관계적 차이들]이 주어져 있다.”

멜라네시아의 하우가 그 무의식적 비평형의 의식화된 형태라면(Lévi-Strauss, 1950, XXXIX), 기표와 기의 간의 불합치가 필연적으로 도입하는<sup>8)</sup> 과잉 기표, “제로 상징가”(ibid, L)는 어떤 고정된 지시대상도 지시하지 않은 채,

7) 위베르-모스가 선취한 것은 레비브뤼엘(Lévy-Bruhl)의 ‘전논리적 사고’ 유형보다 구조언어학적 관점에 가깝다(Lévi-Strauss, 1950, XXXI). “주술적인 속성들에 관한 표상에 다가서자마자 언어와 비결할 만한 현상들의 현존 안에 있게 된다”(Mauss, 1902, 97). 즉, 여기서 마나 주술 등으로 지시되는 것은 신비한 힘이나 사회적 감정 따위가 아니라, 엄밀히 ‘무의식적 사고’의 층위다.

8) “상징은 그것이 상징하는 것보다 실재적이며, 기표가 기의에 선행하고 그것을 결정한다”(ibid, XXXII).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로 어떠한 값도 될 수 있는 보충적 부분의 존재(함)에 관한 표현이 된다. 모든 기표들의 지시값 집합에 포함되지만 어느 하나로 속하지는 않는(부분적으로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지만, 또한 아무것도 아닌) ‘그 것’의 기표를, 하우의 이름을 따서  $h$ 로 표기해 보자. 떠다니는 ‘기표  $h$ ’가 상징하는 것은 체계를 정립시키는 역설적 조건으로서 ‘공백’(∅) 자체가 된다. 모든 것의 상징들이 산출되는 잠재적 차이로서 그 공백의 상징화는 그것이 없다면 체계 전체를 교란할 수도 있는 내재적 타자성을 가리킨다. 상징 체계에서 공백의 존재는 그것을 배제한 채 그 밖의 존재들이 보장되지 않는 자리기 때문이다. 즉, “그 자체로는 특정한 의미가 없는 마나 유형의 개념들은 의미의 부재에 대항하는 기능을 가질 것이다”(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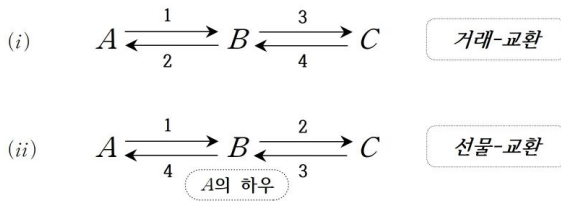
떠다니는 기표가 지시하는 것은 그 식별 불가능한 실재다. 멜라네시아에서 그것이 하우라면 이제 다음의 이야기가 된다. 마치 중력처럼 원 증여자(A)에게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할 때, 당장의 호혜관계( $B \leftrightarrow C$ )와 무관한 A의 그 힘은 ‘이미 교환인’ 상황을 비교환상황인 것처럼 기술하기 위해 덧붙여진 힘이다. 기본적으로 무호혜적인(등가물 반환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증여상황(‘선물’)에서 답례를 촉발하는 외력으로 하우가 상정되기 때문이다(모스의 해석).

일단 다음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등가물의 즉각적 반환이 없는 증여를 ‘선물’이라고 할 때, 그것은 자체적 호혜를 벗어나 있다. 어떤 관계가 호혜적(reciprocal)이라면, 누군가의 증여가 그 반대-증여와 짝지어져야 한다( $A \rightarrow B/B \rightarrow A$ ). 선물의 경우 증여자에서 수령자로 가는 일방의 증여는 있지만 반대-증여의 작동을 동시에 담보하지는 않으므로( $A \rightarrow B \rightarrow C$ ), ‘무호혜적’ 상황에 해당한다. 선물이 호혜 상황과 무조건 동일시된다면, 선물은 ‘물물교환’의 범주로 곧장 포섭될 것이며 애초에 ‘선물’이라는 일방적 증여의 범주를 상정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증여가 반대-증여와 재연결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물물교환 같은 ‘거래적 호혜’의 경우, 일반적으로 등가성 원리가 해당 자리에 배치된다.

A로부터 B로 가는 무언가는 적어도 같은 크기의 대상을 A로 다시 가도록 요구한다는 가정은 양자를 직접적 호혜로 성립시키는 공리처럼 도입돼 있다. 이 같은 등가교환이 호혜성의 기본적인고 유일한 형식으로 이해될 때, 선물의 예외성은 결국의 상품적 속성화에 포위된다. 선물의 답례를 축성하는 원인은 대상의 증가성으로 치환될 것이며, 선물-교환은 거래-교환의 하위범주로 동류화될 것이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다시피, 『증여론』에서 모스는 단순히 호혜성을 증가성으로 등치시키는 쉬운 길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려 들지 않는다. “받은 물건에는 어떤 힘이 있기에 답례하게 하는가?”라는 처음의 질문을 강제력으로서의 규범(‘선물법’)의 차원과 병치시키면서 —“선물에 답례케 하는 법적 규칙”(Mauss, 1925, 4)— 모스는 선물이 등가교환의 초기형태로 환원될 수 없는 이유(선물이 거래 범주와 따로 설정돼야 하는 이유)를 추적한다. 말하자면, 선물-교환은 증가성의 호혜관계를 초과해 있다. 선물-교환적 호혜성을 정립시키는 조건은 가치의 증가성이 아니라 차이의 형태로 개입하는 타자성이기 때문이다. 그 동류화될 수 없는 비평형성은 호혜성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들며, 해당 범주 자체를 확장한다[그림 4].



[그림 4] 거래-교환과 선물-교환의 기본꼴  
 운동이 관측되는 순서가 달라짐에 따라 호혜성이 분기한다.

선물은 무호혜적 증여들의 개별 작동상에서 흘러가는 운동이며, 증가성에 기반한 ‘거래적 호혜’ 관계(i)의 증여 과정과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즉, 개별

증여/수령 관계는 직접적 호혜가 아니지만 그것들의 연쇄적 중첩의 효과로 ‘교환’이 되는 경우, 무호혜가 다른 방식의 ‘확장적 호혜’ 관계(ii)의 조건이 된다. 이것은 우회경로가 현실화되는 시차로 인해 즉각적 답례가 아닌 지연된 답례의 기대구조를 상정한다. 선물이 교환으로 작동하는 절차(ii)에는 각 증여 시퀀스에 걸쳐있는 부분적 호혜가 보충적으로 개입하는 까닭이다. 이때 선물-교환은  $A \rightarrow B(1 \rightarrow 4)$ 가 호혜 관계로 성립하기 위해  $B \rightarrow C(2 \rightarrow 3)$ 의 보충을 필수적으로 요청하는 형식이 된다.

지금의 확장적 호혜는 그 자신은 호혜 관계가 아닌 채로 있으면서 아직 오지 않은 중간적 호혜를 미리 존재하고 작동한 것으로 가정하는 호혜다. 이 보충적 시퀀스를  $\psi$ 로 표기해 보자. 보충자  $\psi$ 는 이른바 선물의 타자로 표현되는 그것인데, 바로 그 삼자의 개입이 개별의 답례 없는 증여를 우회적 교환으로 전환한다. 결국 증여관계의 부분적 연결 가운데 보충적 개입이 활성화하는 ‘유예된’ 2자관계 사슬이 선물 교환 상황을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교환은  $\psi$ 의 내부교환( $B \rightarrow C \rightarrow B$ )과 외부교환( $A \rightarrow \psi \rightarrow A$ )을 교차-중첩시키면서, 즉각적인 2자관계(i)로의 환원을 제어하고 숨겨진 3자관계로 확장한다.

따라서 모스가 기술하는 구도에서, 선물-교환의 변형은 중간자 B의 ‘처신’에 거의 집중돼 있다. 정확히는, 선물의 수령자로서 B와 외부교환의 참여자로서  $\psi$  사이의 전환 절차에 방점이 찍힌다. “우리는 그것을 거래하지 않는다.” 즉, 애초의 증여/수령 관계( $A \rightarrow B$ )를 오롯이 C와의 즉각적 거래로 대체하는 ‘망각’ 속에 A가 교환관계로부터 소외되는 사태( $A \rightarrow [B \rightarrow C]$ )를 사전에 방지하는 문제다. (ii)에서 A에게 재증여할 B의 ‘의무’(3→4)가 상정되지 않는 한, B가 C와의 거래자처럼 남거나 물건이 한데 머물게 되면서 선물-교환이 작동 중지될 위험에 처할 것이다. “간직하는 것은 옳지 않다”(ibid, 14)라는 라나이피라 모스의 명제가 『증여론』 전체에서 핵심 자리로 배치되는 까닭도, 이 중간자의 적절한 전환이—행위자의 의도나 감정, 물건의 가치나 효용 같은 기능적 층위의 환원과 별개로<sup>9)</sup>—선물-교환의 특이성을 현실화하는 필수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하우’가 하나의 강제력으로 도입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선물의 하우가 작동을 시작하는 지점은 그것을 받은 B가 A와의 직접 관계로 식별되지 않는 제3의 관계에 진입할 때(B→C)이며, 그 답례(C→B)를 A에 ‘되돌려’ 줄 것을 강제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보충재(B←C)만이 유일한 교환이 된다면, 짝을 잃고 공백이 된 A의 하우가 ‘부정적 힘으로’ 개입해 올 것이다(ibid 참조). 살린스(Sahlins, 1972)의 해석에 따르면 이는 무엇보다 중간자인 B로 하여금 ‘자기 것이 아닌’ 잉여를 전유치 않도록 하는 문제며, 선물-교환의 장을 2자관계의 의식적 종결들이 아닌 3자관계의 무의식적 결연들로 파악하는 기초가 된다. 하우에 관한 모스의 설명은 기능주의적 해석에서 빠져나간 채로, 이미 구조적 형상화에 가까이 있다. 그러나 아마도, 아직 구조주의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 2. 관점들의 교환: 내재적 타자성과 자기변형

레비스트로스라면 그러한 개입을 일종의 ‘허구 힘(fictitious force)’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중력에 대해 그렇게 불렀을 때처럼 말이다. ‘허구 힘’(또는 ‘겉보기힘’)<sup>10)</sup>은 서로 다른 관측계의 간극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로서, 비관성계(가속하는 기준계)를 ‘마치 관성계인 것처럼’ 기술하기 위해 덧붙여진 힘이다. 앞 방향으로 가속 중인 자동차 안의 승객은 자신이 뒤로 잡아당겨지는 느낌을 받는데, 승객의 관점에서는 정지해 있는 신체에 역방향의 가속이 가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무엇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려면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것이며, 관성계 상에 별도의 외력이 작용한 듯이 상황을 기술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의 ‘힘’은 사실 관찰자가 속한 기준계 자체가 가속한 효과다. 레비스트로스와 모스 사이 관점의 차이, 그리고 양자 간 교환

9) “탐나거나 꺼리는 것일지라도, 그것(taonga)을 수중에 간직하는 것은 옳지 않다”(ibid).

10) 이는 한때 ‘관성력’으로 불리기도 했다. 고전 역학의 운동법칙은 관성계, 즉 정지해 있거나 등속운동 중인 좌표계를 기준으로 기술되었기에, 비관성계에서 해당 법칙의 유효성을 유지하려면 별개의 항을 보충할 필요가 있었다. 원심력이나 전향력 등도 이런 가상의 힘에 해당한다.

가능성을 말하기 위해 지금의 유비를 좀 더 밀고 가보자.

중력이 그러한 가상의 힘이라는 말은 ‘중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력 효과와 가속하는 기준계의 효과가 식별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자유낙하의 중력가속도 안에서 중력을 ‘느끼지’ 못하듯이, 무중력상태에서 갑자기 중력가속도로 위로 당겨지는 기준계에서는 중력이 있는 듯 느껴질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사고실험이 보여주는 바는 기준계 가속이 곧 중력장과 동등하다는 관점의 전환이다. 고전 역학에서 질량이 있는 물체 간에 작용하는 ‘힘’으로 정의됐던 것을 기준계의 ‘가속 효과’로 대체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특수한 관성계만이 아닌 임의의 비관성계 모두에서 중력 법칙이 동등하게 성립함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확장을 통해 오히려 일반중력(중력의 보편성)의 지위가 더 확고해진다.

선물-교환에서 하우로 표상되는 힘을 레비스트로스가 떠다니는 기표의 실재로 대체했을 때, 그때의 하우-기표( $h$ )는 ‘이미-교환임’의 효과가 된다. 즉, (사물들이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하우-외력이 작용한 결과로서의 답례 상황은 항상적 교환이 작동 중인(‘가속 중인’) 상황에서 존재 형태의 효과와 식별 불가능하며(동등하며), 따라서 레비스트로스에게 하우는 비교환적 상황에서 ‘교환을 촉발하는’ 힘이라기보다, 선행하는 —“항상 그리고 이미 있는”<sup>11)</sup>— 교환에서 나타나는 가상적 차이의 이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비스트로스의 비판이 지향하는 이후의 지점들이다. 단순히 ‘하우는 없다’라거나, 더욱이 ‘선물은 없다’라는 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원주민의 해석을 기각하면서 관찰자의 해석으로 덮어씌우거나, 상품의 관점에서 선물을 등가교환의 초기형태처럼 배치하는 것과도 멀다. 오히려 레비스트로스의 선택은 ‘일반선물’(즉, 선물의 보편성)의 존재로 상황을 도치시킨다.

11) 교환의 기본구조로서 교차시춘혼 논리에 관한 레비스트로스(Lévi-Strauss, 1967, 151-154)의 관점을 들뢰즈-귀타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이 확장 체계에서는 원초적 혈연도, 최초의 세대나 시초적 교환도 없다. 항상 그리고 이미 결연들이 있다”(Deleuze & Guattari, 1972, 184).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풀어보자.

우리는 답례가 있으면 호혜 상태로 간주했다. 이 경우 선물은 어쨌든 무호혜적 증여 범주에 속한다.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선물이라는 범주를 따로 설정할 이유도 없고, 문제는 간단했을 것이다. 실제로는 경험적으로 관찰되듯이, 그리고 적어도 멜라네시아적 교환 상황에선 확실히, 그런 선물이 있다. 여기서 답례의 추동력이 하우라면 상황은 일단 다음과 같다.

$$a) (\text{선물}) = -(\text{답례}) (\approx h)$$

이는 선물이 반(-)답례적 형태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선물의 증여에서 답례를 추동하는 힘이 증여와 반대 방향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하우라는 힘이 있으며( $h=F$ ), 작동해서 물건의 운동 방향을 바꾸고( $[B \rightarrow C \rightarrow B] \rightarrow A$ ), ‘선물’을 ‘교환’이게 만든다. 만약 이 상황에서 ‘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h=0$ ), ‘선물’은 단지 ‘증여’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a)의 꼴을 유지한 채로 좌변과 우변을 다음처럼 바꿔 쓸 수 있다.

$$\acute{a}) (\text{선물}) + (\text{답례}) = 0 (\approx h)$$

‘같은’ 상황이지만, 이제 관점이 달라졌다. 이 경우 우리는 ‘선물’과 ‘답례’를 항상 한꺼번에 생각해야 한다. 즉, 모든 증여는 이미-교환상황에서의 증여가 된다. 여기서 좌변에 보충적으로 삽입된 (답례) 항은 ‘이미-교환임’을 표시하며, a)의 우변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된다. a)처럼 답례를 추동하는 ‘외력’은 없는 가운데( $h=0$ ), 이미-교환인 상황에서의 증여가 관점 a)에서의 ‘답례’(하우가 작용한 상태)를 내부에 함축하게 된다. 즉, 하우힘은 없지만 여전히 하우기표( $h$ )는 ‘허구 힘’으로서 있다.

a)의 경우, 하우힘이 나타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식별된다. ‘답례’가 추동되거나 아니면 답례 없는 ‘증여’가 유지된다.  $\acute{a}$ )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답



레 없는 증여와 (추동된) 답례가 식별 불가능하다. a)의 좌변, [(선물)+(답례)]을 별개의 항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를 알지 못한다. [(선물)+(답례)] 자체가 또 하나의 항(답례-증여)이며, 증여는 답례(로서의 증여)다. 다시 말해 이마-교환 상황은 모든 증여가 이마-답례인 상황이다. 레비스트로스가 “교환 자체를 기본현상으로 인지하는 것이 딜레마를 피하는 유일한 길”이라 언급하면서 지시하는 바이기도 하다(Lévi-Strauss, 1950, XXXVIII). 이른바 교환의 삼위일체에 관해, 증여-수령-답례의 세 측면은 동시에 하나의 기본구조로서 선물-교환이라는 일체이므로 각각을 전체의 ‘구성요소’로 보지 말고 —“교환은 증여, 수령, 답례의 의무들을 신비한 접착제 [하우-힘]로 이어 붙인 복합구성물이 아니다”— 교환이라는 작동으로, 즉 ‘교환을 교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환은 상징적 사고(하우-기표)에 의해, 상징적 사고에 직접적으로 주어진 종합이다”(ibid, XLVI, 추가는 필자).

우리가 상황을 a)와 같이 인지할 때, 모든 증여가 이마-답례임이 선물을 비선물로(거래나 상품으로) 동류화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선물법’은 선물을 거래하지 않을 것이며(거래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고), 선물/비선물의 구별은 다른 방향에서 작동 중인 것으로 발견되어야 한다. 답례로서 증여관계, ‘증여자가 이미 답례자’라는 사실로 지시되는 것은 중간자의 의무가 이제 모든 참여자로 확장 적용된다는 점이다. 각 증여자/수령자 자리에 앞서의 ‘보충자( $\psi$ )’가 이미 내재한 채, 이번엔 하나가 아닌 다수로 출현하게 된다. 즉, A에서 B로의 증여관계를 나타내는 순서쌍  $\langle A, B \rangle$ 는 답례로서-증여관계에서  $\langle A(B, A), B \rangle$ 로 다시 쓰인다.  $A(B, A)$ 는 이전 관계 속에서 이미  $B \rightarrow A$ 의 증여관계  $\langle B, A \rangle$ 가 존재했음을 가리킨다. 선행하는 관계성을 내포하는 A, 즉 B와의 답례 의무 속에 놓인  $A(B, A)$ 는 실제로 (그 밖의 C 등이 아닌) B에 증여한다. 결국  $\langle A(B, A), B \rangle$ 는 A에서 B로의 증여가 언제나 재증여의 형태임을 표시한다.

그런데 이때 ‘수령자’ B는  $B(A, B)$ 가 아닌  $B(C, B)$ 가 된다. 선물-교환 형식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로써 2자관계의 즉시 종결  $\langle A(B, A), B(A, B) \rangle$ 이 항시 유예되고 또 다른 선물관계로 확장하는 까닭이다.  $\langle A(B, A),$

$\langle B(C, B) \rangle \rightarrow \langle B(C, B), C \rangle$ [그림 5-(i)]. 이런 식으로 각각의 반(半)호혜적 보충자들이 계속해서 다수로 개입해 들어오며, 결과적으로 B를 경유해 (C, B)와 (A, B) 간 ‘변환’ 절차를  $\langle B(C, B), B(A, B) \rangle$ 로 진행한다. 따라서  $\langle B(A, B), A \rangle$ 라는 지연된 답례로 교환이 작동한 것이 된다.  $\langle A, B(C, B) \rangle \rightarrow \langle B(A, B), A \rangle$ [그림 5-(ii)].

$$\begin{array}{ccc}
 (i) & & \\
 \langle A(B, A), B(C, B) \rangle \rightarrow & \underbrace{[\langle B(C, B), C(D, C) \rangle \rightarrow \dots \rightarrow \langle C(B, C), B(A, B) \rangle]}_{(2)} & \rightarrow \langle B(A, B), A \rangle \\
 & \underbrace{\langle C(D, C), D(E, D) \rangle \rightarrow \dots \rightarrow \langle D(C, D), C(B, C) \rangle}_{\psi} & \\
 (1) & & (3)
 \end{array}$$

$$\begin{array}{ccc}
 (ii) & & \\
 \langle A, B(C, B) \rangle \rightsquigarrow \langle B(A, B), A \rangle (+) \rightleftharpoons & \underbrace{[\langle B(C, B), C \rangle \rightsquigarrow \langle C, B(A, B) \rangle]}_{\psi} & \\
 & \Rightarrow \langle B(C, B), B(A, B) \rangle & \\
 (1) & (3) & (2)
 \end{array}$$

[그림 5] 선물-교환 형식의 확장 체계  
 모든 증여는 이마-교환인 상황에서의 재증여로 있다.

결국, 첫 번째 증여 단계(1)에서 ‘수령자’ B의 자리가 (A, B)가 아닌 (C, B)로 이미 대체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세 번째 단계(3)에서 ‘답례자’ B의 자리가 (C, B)가 아닌 (A, B)로 대체되기 위해  $B(C, B)$ 를  $B(A, B)$ 로 변형하는 절차(2)가 삽입되는 —그리고 미리 끌어당겨지는— 상황, 이것이 선물-교환을 그 밖의 교환과 구별되는 형식으로 만든다.

이런 교차배열적 시퀀스는 내부교환과 외부교환 모두에서 내재적 타자성을 도입한다. 앞서 ‘보충자  $\psi$ ’로 표기한 타자성[그림 5의 (i)-(2)]의 개입뿐 아니라( $A \rightarrow \psi \rightarrow A$ ), 이제 그것이 참여자 모두에게 확장돼 내적으로 다중화하는 ‘변환자  $\Psi$ ’로 작동할 때의 타자성[그림 5의 (ii)-(2)]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A, B, C 등은 상황에 따라 ‘같지만 다른’ 보충자/변환자처럼 있게 된다. C와의 선행관계 속에

놓인 B와, A와의 관계 속에 놓인 B는 ‘현실적으로’ 같지만 ‘가상적으로’ 다르다.  $B_1(C, B) \cong B_2(A, B)$ . 유예된 시간 속에서 ‘변형’했다고( $B_1 \rightleftharpoons B_2$ ) 볼 수도 있다. 선물을 주었을 때의 B와 답례할 때의 B가 ‘같지’ 않다.<sup>12)</sup> 따라서 이 같은 교차배열에서는 모든 증거가 답례지만 ‘정확한’ 상호답례가 아니게 된다. 다시 말해, 직접 거래되지 않고 선물로 남아 있게 된다. 동시에 선물-교환의 확장이 언제나 이미 주어져 있는 것으로 상정된다.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상정되며 끊임없이 A-B 관계에 소급적으로 도래하는 B-C는 A-B의 시점에서 식별되거나 명명되지 않는 외부성이지만, A-B가 호혜 관계로 성립하기 위해 미리 끌어당겨지는 타자성이다. 그리고 A와 B 사이에서 이 내재적 타자성의 작동은 모든 개별자를 잠재적 차이의 기표들로, 즉 자기와의 차이화( $A_1 \rightleftharpoons A_2, B_1 \rightleftharpoons B_2, C_1 \rightleftharpoons C_2, \dots$ )로 나타나게 한다. 결국 선물-교환은 동일자에 대한 동일자(등가물)의 교환 형식이기보다, 참여자를 자기변형의 교차적 흐름 속에 다중화하는 ‘관점들의 교환’에 가깝다. “교환되는 것은 조개껍데기가 아니라 관점들”이라는 『선물의 젠더』(Strathern, 1988)의 테제처럼, 그것은 ‘증여자’와 ‘수령자’ 사이 관계들의 교환, 정확히는 이전 수령자/증여자 관계와 이후 증여자/수령자 관계의 관계들이다. 재론하겠지만, 이런 교환 형식은 주체의 내적 분할을 통해 내재적 타자성과의 지속적 조우를 축성하는 상황들을 만들어 내며 ‘익명적 변형’에 중첩한다.

이것은 상황에 대한 관점들의 차이와, 그것을 조건으로 하는 변형에 관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즉, “관점들의 교환”(Viveiros de Castro, 2004)으로 선물-교환을 재정의하는 전환은 그 자체가 상황 관점 간의 차이와 교환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차이는 기술했듯이 상황 a)의 설정 때문이다. 답례를 추동하는

12) 교환양식과 존재양태의 상호 얽힘을 유사성(개체 동일성)이 아닌 차이들의 생성으로 접근하는 지금의 관점은 개체론적 설명 틀을 일정하게 초과한다. 이런 자기변형 또는 주체의 분할 전이라는 문제는 『증여론』에서 주요 단초가 제시되었을 뿐 아니라, 사람(person)의 관념에 관한 모스의 마지막 글에서 일관된 연구 관심으로 유지된다. 모스는 호혜성이나 위세의 경제 이전에, 선물-교환의 분할 양식이 가면(persona)-인격-신체 등 다중적 중첩태로 교차하는 분기를 탐색한다(Mauss, 1938).

외력으로서 하우 힘은 없지만( $h=0$ ) ‘없음’의 기표로서 하우-기표( $h$ )는 ‘허구 힘’처럼 적용되어 모든 증여가 이마-답례인 상황이다. 하우 힘이 상정되면 보충자  $\psi$ 이 나타나 비교환상황 속 우회적 호혜의 특수조건을 만족하겠지만, 하우 힘 대신 하우-기표가 상정되면 증여는 이마-교환인 상황에서 개별자들이 가상적 차이의 형태(변환자  $\Pi$ )로 ‘존재함’의 효과가 된다.

이는 선물-교환을 일반교환의 보편 형식으로 도치시키는 선택과 관계한다. 모스에게 하우가 교환을 추동하는 힘이었다면, 레비스트로스에게 있어 항상적 교환의 조건처럼 설정되어 있는 것은 ‘금기’다. 그리고 근친혼 금기가 수립하는 그 “관계들의 세계”는 기표와 기의 간 연속적 비평형과 근본적으로 연동돼 있다. 이때 금기, 레비스트로스(Lévi-Strauss, 1967)가 말하는 “규칙으로서의 규칙”은 그 자체로 선호되는 혼인유형에 관해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는, 단지 동일자가 아닌 타자와의 관계로 혼인교환(결연의 선물-교환 형식)이 작동 중임을 표시할 뿐인 공백의 기표다. 구체적으로 누구와 혼인할지 규정하진 않지만, 그것은 족내혼 금지의 제약(따라서 족외혼의 가능성 형태를) 통해 ‘교차사촌혼이 존재하도록’ 개입한다. A가 B와 관계를 맺으리라는 현실적 규칙 이전에 그것이 그러한 것이게 하는, B-C 관계를 ‘옳지 않은’ 것으로 제약하며 A-B의 부분적 결연을 예기하는 부정 규칙이 또한 ‘허구 힘’처럼 있는 것이다. 즉, 금기는 이마-교환의 기표다.

앞서 논했듯 ‘선물법’은 선물-교환의 중간자가 거래-교환의 중개자처럼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곧 선물이 선물로서 교환되도록 하는 논리-실천 형식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비거래적 선물이되 교환이 되게 하는 패턴이 내재적 타자성을 도입하며, 중간자의 올바른 처신을 금기의 형태로 불러들인다. “간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혼인관계는 언제나 ‘바람직하지 않은’ 혼인 가능성을 회피하는 가상적 차이와의 관계로 있다. 이는 교환상황을 가시적 관측 사실로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공백기표가 긍정 규칙으로서의 기의에 분리접속하는 변형의 경로들로 살피는 일이다. 『친족의 기본구조』의 근저에 놓인 것은 타자들의 차이를 조건으로 하는

‘결연’이지, ‘혈연’을 통한 유사성의 재구성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강도(強度)상의 차이로, 레비스트로스가 강조하듯 차이의 교환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유사성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즉, 유사성이란 단지 차이의 한 가지 특수한 경우”(Lévi-Strauss, 1971, 32)일 뿐, 그 반대가 아니다. 이것은 구조주의의 고전적 규율이지만, 비베이루스 지 까스뜨루(Viveiros de Castro, 2014, 59)의 말마따나, 자칭 “구조주의적” 인류학자 가운데 이런 생각을 실제로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던 사람은 별로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전환은 선물-교환의 타자성에 관한 구조적 설명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 ‘익명-교환’의 타자성으로 확장하는 작업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이제 지금의 도치적 개념화를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교환을 다시 살펴보자.

#### IV. 익명적인 화폐: 이마변형(ex-change)으로서의 교환

##### 1. 기관-없는-교환

앞서 UTXO 개념으로부터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사실관계다. 첫째, 교환 참여자는 이후 증여할 상대와의 관계에서 이전 증여/수령 관계의 가상적 차이들로 있다. A가 B에 9BTC를 주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후 단위는 생략한다). A는 X, Y, Z로부터 각각 30, 60, 90을 이미 받은 상태를 가정하자. 이 경우 A는  $X-A_1(30)$ ,  $Y-A_2(60)$ ,  $Z-A_3(90)$ 의 출력값 집합들로 존재하며, 이후 B로의 증여 이벤트를 통해 그중에서  $X-A_1$ 으로 가시화된다. 이때 A가 줄 9는 X가 준 30에서 온 것이다. 즉, A-B의 관계가 A를 (그 밖의 Y나 Z가 아닌) X와의 관계로 제약적으로 형상화한다.

둘째, 현재의 증여/수령 이벤트는 증여자들을 다시 두 개의 내적 차이들로 분할한다. 만약  $A_1$ 이  $B_2$ 에 9를 주었다면,  $\langle A_1, B_2 \rangle$ 의 트랜잭션에 따른 출력값은 9와

21로 재생성된다(2장의 [그림 2] 참조). 이때 후자의 21은  $A_1$ - $B_2$ 의 증여/수령 후  $A_1$ 에 되돌아오는 값이다. 각각의 UTXO는 교환의 기본구조로서 트랜잭션마다 ‘통짜로’ 소진되므로, 그에 대한 반환 또는 변화(change)가 함께 생성되어야 한다. 즉  $A_1$ 이  $B_2$ 에 9를 증여할 때,  $\langle A_1, B_2 \rangle$ 의 사건이  $\langle X, A_1 \rangle$ 과의 관계로  $A_1$ 에 21을 재증여하는 셈이다. 30이 21로 수정되는 게 아니라(그런 외재적 관찰 기능이 상정되지 않는다), 또 다른 (재)증여/수령의 차이화가 있을 뿐이다.  $A_1$ - $B_2$  관계에 따른  $A_1$ 은  $X$ - $A_1$ 으로서의  $A_1$ 과 다른 UTXO다.

셋째, 모든 증여/수령은 이후 증여 관계를 이전 수령 관계와 중첩시키는 것으로 성립한다.  $B_2$ 가  $C_3$ 에 3을 증여한다면, 그것은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사건이며 존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B_2$ 가 증여하는 행위 자체는 그 3에 대한  $B$ 의 ‘소유’를 입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중지불’ 문제와도 관련되는데, 해당 값은 다른 트랜잭션에서 한번 증여된 값의 복제 데이터일 수도 있을 것이며  $C_3$ 는 당장의 증여행위의 관측 사실로 그 여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langle B_2, C_3 \rangle$ 의 증여/수령 관계는 언제나 선행하는 다른 수령/증여 관계와의 관계로서(만) 확인되어야 하고, 그 관계들의 관계들 속에서  $B_2$ - $C_3$ 의 가상적 결연체(affinité)는 제약적으로 현실화되어야 한다. 즉  $\langle B_2, C_3 \rangle$ 는  $\langle A_1, B_2 \rangle$ 와 소급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통해 존재하며,  $B_2$ 의 소유는 역설적으로 그것이  $C_3$ 에 증여된 이후에(자신의 ‘소유’가 이미 아니게 된 상황에서), 그 사라짐과 넘겨짐을 조건으로 나타난다.

“오직 소진되는 과정에서 실현되며, 실현되는 과정에서 소진되는”(Wagner, 1986, xi) 이런 “예기-제거(obviation)” 시퀀스<sup>13)</sup> 가운데, 일종의 주면서-보존하기가 실행된다. 그러나 그때의 소유는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만 확인된다는 점에서

13) 이 재귀적이고 역설적인 교차배열은 예표(prefiguration)·예기(prescription)의 다중차원적 운동을 표현한다. 기존 관습상징에 간섭하는 비관습적 항을 삽입해 새로운 관계가 그것을 대체하도록 ‘미리 형상화하고 동시에 감추는’ 변형을 말한다(Wagner, 1978; 1986). 상호모순적이면서도 서로 지탱하는 관점들 간의 긴장과 교대를 지시하는 이 개념은 용어(“obviation”) 자체가 중첩과 얽힘의 불확정성을 함축하고 있어 단일 명사로 번역하기 어렵다. 『부분적인 연결들』(Strathern, 2004)의 국역본(2019)에 쓰인 번역어를 따라 “예기-제거”로 표기한다.

“양도 불가능한 소유”라기보다는 ‘소유 불가능한 양도’에 가깝다. 블록체인의 교환에 필수적인 이 자기소외(self-alienation) 또는 자기변형은 소유와 증여 사이 불확정성(점유의 고정된 위치와 증여 흐름의 비평형성)을 도입한다. 여기서 소유되는 것이 있다면 대상들이 아니라 차라리 관계들이다. 그리고 관계들의 사실을 소유하는 것은 참여자가 이루는 네트워크 자신이다.

UTXO는 ‘소유’를 ‘아직(재)증여하지 않은 수령’의 범주로 변형하고 ‘이후(재)증여할 이전수령’의 개념으로 도치함으로써, 항상적 교환 상황을 상정한다. 즉, 그것은 이마교환의 기표가 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모든 수령은 재증여를 조건으로 하는 일시적 점유처럼 보이게 되며, 이로써  $B_2$ 를 경유해  $C_3$ 와의 관계와  $A_1$ 과의 관계를 교차 중첩시킨다.  $B_2$ 의 점유는  $C_3$ 의 관점에서 미리수령할 증여이자  $A_1$ 의 관점에서 이마증여한 수령이다. 관점들의 교환으로서 선물교환에 관한 명제는 오히려 지금의 네트워크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블록체인의 모든 교환은 항상 이전 교환의 변형이며 이마-변형(ex-change)으로서의 교환(관점 차이들의 교환)인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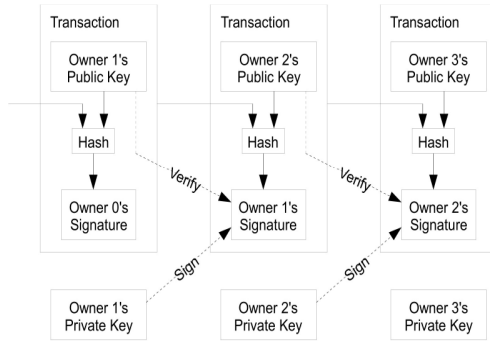
이렇게 매 증여/수령 이벤트마다 새로운 UTXO 집합들로 확장·분할하는 한편 이전-이후의 관계들로 재연결되는 결연체들이 생성된다. 이 관계는 개별 ‘코인’에 내포된다. 여기서 코인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실재하는 것으로 ‘접혀 있는’ 내재적 다중성의 아피니테다. 즉,  $B_2$ 가  $C_3$ 에 3을 줄 때 실제 증여하는 것은 ‘ $B_2$ 가  $C_3$ 에 3을 증여함’, 그리고 ‘그것은  $A_1$ 이  $B_2$ 에 증여한 9에서 재증여함’의 사실관계다.  $B_2$ 는 “ $C_3$ 에게 줌”을 주는 것이며, 이는  $\langle B_2, C_3 \rangle$ 와  $\langle A_1, B_2 \rangle$ 의 중첩태( $\langle A_1, B_2, C_3 \rangle$ )를 함축한다.  $B_2$ 가  $C_3$ 에  $\langle A_1, B_2, C_3 \rangle$ 를 증여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말해주는 바는 교환되는 ‘내용’은 곧 그것이 교환되는 ‘형태’라는 사실이다. 비트코인 교환에서 3, 6, 9 등의 값이 기반하는 것은 어떤 ‘공백’이고(한때 금본위제에서 상정됐던 금과 같은 실물이라기보다), 이를 바탕으로 하는 관점들의 교환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충분히(‘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작동한다. 관점들의 교환을 현실화하는 유효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말이다. 이는 기관-없는 교환 및 존재의 증명이라

는 절차들로 얽혀 있다.

트랜잭션의 생성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의 어느 노드나 서로에 대해 가능하다. 증여/수령 기록의 확인을 누구나 요청할 수 있다. 기록되는 사실은 일차적으로 B<sub>2</sub>-C<sub>3</sub> 등의 결합이라는 사건이고, 그런 사건의 기록은 외부 기록 체계 없이 각 노드에 분산된 채 저장 및 상호 동기화된다. 이런 방식의 ‘체계 없는 기록’은 역설적으로 ‘체계성’을 담보하는데, 외부 체계의 취약성에 따른 손실·변조 위험이 분산된 다수 노드 간 기록 공유라는 형태로 상쇄되고 오히려 온전한 기록 생성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이런 P2P 네트워크에서는 참여자들의 연결망 자체가 내적 기록 체계로 작동하며, 부분들(피어들)의 교차 시슬이 곧 기록의 형태이자 내용이 된다. A와 B가 대상 X를 교환한다기보다, 동일자를 다중화하는 내재적 아피니테들과 이를 연쇄 관계로 기록하는 형태가 기록되는 내용인 것이다.

결국, 교환되는 코인의 내용=형태는 그것이 등재되는 기록 체계의 형태=내용과 동치 관계를 이룬다. 따라서 그것은 대상적 속성으로 재현되기 이전에 ‘항상 그리고 이미’ 교환의 연쇄로 작동한다. 개별 코인은 앞선 증여자의 서명과 이후 증여자가 될(서명할) 현재 수령자의 암호 키를 담은 기록이며(그림 6), 이들의 연쇄가 특정 분절로 나뉜 블록들 자체는 ‘장부’가 된다. 그런 블록들의 체인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부분적 연결들의 다중적 형상으로 존재하게 한다. 화폐를 일종의 ‘관점들의 교환’으로 재정의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나카모토 사토시(Nakamoto, 2008)가 고안했을 때, 이는 별도의 식별 기능 없이도 일련의 교환을 유효한 작동으로 만든다. 즉, 교환의 사실 자체가 해당 관계로의 참여를 확인한다.





[그림 6] 서명 연쇄로서 화폐(Nakamoto, 2008)

이런 교환 시스템에서 현실적 문제는 앞서도 언급한 이중지불의 가능성을 적절히 제어하는 것이다. 이는 A가 B에게 특정 금액의 기록 데이터를 전송한 후 다시 그 파일을 복제해 C에게 같은 금액을 전송하는 사태를 말한다. 기존 시스템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환 기록을 관리할(거래금액의 증감과 가치의 이전을 통제할) 외재적 매개 기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중앙 통제기관 없이 이중지불이 없게 하려면, 현재의 참여자가 이전 어느 트랜잭션에서도 ‘서명하지’ 않았다는(증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수령자가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트랜잭션이 없었음을 아는 유일한 길은 존재한 모든 트랜잭션을 아는 것이다.

중앙통제 모델에서는 모든 트랜잭션을 아는 것이 개별 트랜잭션에 속하지 않는 제3의 기관(은행, 조폐국 등)이다. 즉, 거래 당사자들은 서로를 신뢰하기 보다 제3의 중개자를 신뢰하면서 거래를 진행한다. 반면 지금의 ‘기관-없는 교환’이 성립하려면 트랜잭션이 모든 참여자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순서에 따른 교환의 계보가 마련되는 가운데 각각의 트랜잭션 발생 시점에 그것이 처음 수령된 것임을 다수 참여자들이 동의하는 증명 체계가 필요하다.

## 2. 존재 증명: 참여의 사실로서 화폐

비트코인 알고리즘은 이를 위해 특정 시간 동안 발생한 증여/수령들이 개별 집합(블록)으로 ‘존재하게’ 하고, 동시에 해당 블록의 해시값<sup>14)</sup>이 이전 블록의 해시값들을 포함하도록 만든다. 이로써 블록이 생성된 시점에 그에 속한 증여/수령들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한편, 이 같은 존재 증명은 시슬을 형성하며 이후의 사건적 보충이 앞선 사건들에 중첩되게 한다. 말하자면, 존재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확장·강화한다. 이것이 분산 네트워크의 분절 체계로 작동하려면, 참여자들이 개별 트랜잭션에 속하는 채로, 당사자가 아닌 교환 사실까지도 그것이 존재하게 되는 과정에 간여하면서 스스로 참여를 증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증명 절차를 구체화해 보자. 사실 그것 역시 ‘확장된’ 교환 절차로 작동한다.

B가 C에 코인을 증여할 때(트랜잭션 <B, C>가 발생할 때), 이는 해당 트랜잭션의 사실관계(‘B가 C에 얼마를 증여함’) 자체를 네트워크상의 다른 참여자들에게 또한 증여하는 것이다. 이를 수령한 풀(full) 노드들( $F_N$ )<sup>15)</sup>은 그것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다른 노드들에 다시 증여한다. 이를 수령한 채굴(mining) 노드들( $M_N$ )은 특정 시간에 걸쳐 유효한 트랜잭션을 모아 새로운 블록을 생성한다. 후술하겠지만, 블록 생성 과정에서 네트워크에 증여되는 작업량과 그에 대한 ‘답례’ 사실이 이들의 참여를 ‘채굴’로 불리게 한다. 채굴자 노드가 이 블록을 다른 노드들에 보내면 풀 노드는 이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 블록체인에 연결한다. 이는 <B,

14) 해시(hash)란 임의의 길이를 가진 데이터를 고유한 길이의 데이터로 대응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런 해시함수는 암호화의 주요 알고리즘으로 쓰인다. 각 블록은 그에 속할 모든 트랜잭션을 해시값으로 변형하고, 여기에 앞선 블록의 해시값 등을 중첩해 최종 해시값을 생성한다. 따라서 트랜잭션의 사실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할 시 연결된 모든 해시값이 함께 변경되는 얽힌 구조를 짜게 된다.

15) 블록체인 기록을 온전히 보유하고 유지하는 노드다. 이론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는 풀 노드임을 가정할 수 있으나, 블록의 해시 정보만 지닌 채 교환을 수행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는 분류상의 유별적 범주이며, 후술할 채굴 노드를 포함해 실천상에서 교차할 수 있다.

C>가 <A, B>와의 관계로 현실화되면서, UTXO 집합에 기록된 <A, B> 출력값이 아직-증여하지-않은-수령에서 이미-증여한-수령 상태(“spent”)로 교대됨을 의미한다. 이로써 B가 C에 증여하는 트랜잭션이 완료된다(<B, C>가 <A, B, C>로 확장 변형한다)[그림 7].

$$i) \frac{T_x(B)_1 \rightarrow [F_N \rightarrow M_N \rightarrow F_M] \rightarrow T_x(B)_2}{T_x(A) \rightarrow T_x(B)}$$

$$ii) \frac{T_x(B)_1 \rightsquigarrow T_x(B)_2 (+) \leftrightarrow [F_N \rightarrow M_N \rightarrow F_M]}{\begin{matrix} <A, B> \rightarrow <B, C> \\ \Rightarrow <A, B, C> \end{matrix}}$$

[그림 7] 트랜잭션 발생과 완료  
 개별 증여/수령 관계의 발생/완료 시점 사이에  
 항상 중간적 교환(블록 생성-연결)이 끼어든다.

개별 트랜잭션은 해당 증여/수령 관계 안에서 식별되지 않는 제3의 노드에 증여됨으로써 그에 대해 ‘되돌아오는’(블록 생성) 것으로서 성립한다(블록 체인 연결). B<sub>2</sub>는 C<sub>3</sub>에 대상-사물을 증여한다기보다 그것을 포함하는 관계성에 증여-사실을 증여한다. 해당 관계를 요소로 하는 가상적 집합(생성 중인 블록)은 그에 앞선 다른 관계들을 ‘기억해’ 내는 형태로 현실화하면서 중첩된 연결들을 만든다. B<sub>2</sub>의 증여는 그것이 A<sub>1</sub>로부터 왔다는 사실에 기반하지만, 한편으로 B<sub>2</sub>의 증여라는 사건을 통해 A<sub>1</sub>B<sub>2</sub>가 교환에 ‘관련된’ 쉼표로 소급 확인되고 이로써 B<sub>2</sub>C<sub>3</sub>가 A<sub>1</sub>B<sub>2</sub>를 자신의 ‘조건으로’ 생산한다. B<sub>2</sub>가 증여하는 코인은 계정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증여하지-않은 불확정적 기표로 떠다니며, 그것을 새로운 트랜잭션에서 증여하려 할 때 비로소 이전 수령물로 입증돼야 한다. 이전 수령에 따른 소유 사실이 다음 증여를 통해서(만) 확정되는 이런 체계는 확장된 선물-교환적 상황을 도입한다[그림 8].

$$\langle T_x^n, F_N(M_N, F_N) \rangle \rightsquigarrow \langle F_N(T_x, F_N), T_x^n \rangle (+) \leftrightarrow [\langle F_N(M_N, F_N), M_N \rangle \rightsquigarrow \langle M_N, F_N(T_x, F_N) \rangle]$$

$\psi$

$$T_x^{n-1} \rightarrow T_x^n (+) \leftrightarrow [T_x^n \rightarrow \psi \rightarrow T_x^n]$$

[그림 8]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선물-교환적 형식

앞서 논했듯이, 선물-교환의 특이성은 제3자가 교환에 개입하는 방식에 있다. 거래-교환의 경우 거래관계 바깥에서 당사자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기능으로 배치되는 반면, 선물-교환은 삼자들이 그 자체로 교환 참여자 내부에 분산적으로 내포된다. 전자가 모든 이자 간 교환에서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제3의 자리를 메타구조 층위로 전체화한다면, 후자는 그것이 내재적 타자성의 형태로 개입하며 교환을 다중성의 교차 시술로 만든다. 결국 지금의 확장된 정의에서 선물-교환적 형식이란, 관계들을 개별화하는 동시에 개체를 내재적 관계들로 다중화하는 ‘관점들의 교환’을 뜻한다. 그런 변형 속에 개체의 식별 가능성을 벗어나는 다른 연결성이 증폭한다.

C와의 관계로서의  $B(T_x^n)$ 를 A와의 관계로서의  $B(T_x^{n-1})$ 와 중첩시키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그런 의미로 거래-교환적 동일성 한가운데서 선물-교환적 타자성을 역실행한다. 거래-교환의 조건(정체성 식별)에서 빠져나가는 관계를 적어도 하나는 기본구조 안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참여자  $X_{n-1}$ 은  $X_n$ 이라는 개체가 아니라  $X_n$ 과  $X_{n+1}$ 의 ‘관계’에 증여한 것이며, 이렇게 각각의 X는 ‘관계들의 관계들’로서 분할한 채 중첩해 있다. 또는  $X_{n+1}$ 과의 관계로서  $X_n$ 은  $X_{n-1}$ 과의 관계로서  $X_n$ 과 ‘같지만 다른’ 양태다. 이런 변형(ex-change)은 교환 형태와 존재 형태의 상호 얽힘을 암시한다. 이는 선물-교환의 존재론에서 다중-인격(person-multiple)이나 프랙탈 인격(fractal person)으로 개념화됐던 그것이다(Gell, 1998; Wagner, 1991). 와그너(ibid, 163)의 표현을 인용하면, “총합과의 관계 속에 놓인 단위도, 단위와의 관계 속에 놓인 총합도 아니고, 항상 온전하게 함축된 관계성을 지닌 개별체”를 개념화하는 것의 문제다.

관점들의 교환 및 관계들의 함축(‘접힘’)으로서 그 다중체(multiplicity)<sup>16)</sup>의 형상은 개체화/전체화되지 않는 부분적 연결들(Strathern, 2004)에 가깝다. 여기서 부분들은 전체(총합)에 대한 개체(단위)의 유사성 관계가 아니라 언제나 또 다른 ‘부분들’과의 차이적 관계며, ‘전체’와 그것의 더 단순한 ‘부분’이라는 이분법적 전제를 회피한다. 즉, 모든 개별체가 내적으로 이마-연결인 관계성이자 분리된 결연들로 발현하는 형태다. 부분의 합으로서의 전체나 유기체적 개체라기보다, 전체의 구성항으로 치환되지 않는 부분들이 항상 타자와의 짝결합으로 존재하면서 전/개체적 양태를 함께 변형하는(해당 프레임을 빠져나가는) 작동인 것이다. 이런 공제-개입의 동시성을 바탕으로, 근대식 통념으로 제시된 기존 연결성(부분/전체, 개인/사회, 선물/상품, ...) 한복판에서, 그것으로 온전히 재현되지 않는 타-연결성(“익명적 연결들”)의 자리들이 증식한다(이길호, 2023).

잠재적 차이의 확장적/제약적 현실화, “분리(disjunction)와 연결(connection)을 함께 포함하는”(Strathern, 1995, 165) 이 관계망 속에서, 차이는 관계의 조건이자 또한 관계들이 만들어 내는 소급적 표현이 된다. 말하자면 모든 것을 차이의 관계적 실정성의 형식으로, 선행하는 관계들의 교환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관계들은 적절히 차이화하면서 개체 간 동류화라는 기존 재현을 ‘숨기고’ 그와 다른 양태가 ‘드러날’ 분리접속의 관계들(참여자-부분들)을 재생성한다. 이런 “예기-제거적” 교차 시퀀스는 작동상 외부 동일성을 통한 참여자 식별(개체적 재현)을 요하지 않는다. 즉, 지금의 기관-없는-교환은 ‘익명적’ 교환이다.

익명적 교환으로서 블록체인이 식별 기관 없는 분산 네트워크로 작동하는 한, 개별 노드는 교환의 참여자이면서 비당사자처럼 있어야 한다. 즉, 자신이 당사자가 아닌 교환에도 그것이 교환으로 성립하기 위해 얼마간 간여해야 하며, ‘비당사자적

16) 다중체는 개별체의 새로운 유형을 정의하는 메타개념이다(Viveiros de Castro, 2014, 108). 그것의 구체적 이미지로 잘 알려진 것은 “뿌리줄기(rhizome)”(Bateson, 1958; Deleuze & Guattari, 1980)다.

참여자'의 이중형태가 돼야 한다.<sup>17)</sup> 이러한 참여의 '의무'로 표시되는 바는 결국 '교환이(익명의 형태로) 있다'라는 사실관계다. 초월적 규범으로서보다 주체의 내적 분할, 동일자 가운데의 타자와 마주함을 지속시키는 상황 조건들('타자성의 사슬')로서 말이다. 이마-교환임의 기표로서 내재적 타자성이 어떤 기의를 획득하는 순간은 역설적으로 그 내용이 형태로 말려들어 가는 변형 절차가 마련될 때다. 증여/수령의 사건이 '존재함'은 그 블록이 또한 다른 차이들(블록 부분들)을 자신에 '속하게 함'과 동치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요청되는 것이 채굴이다.

이 블록 생성 절차는 해당 블록의 해시값이 이전 블록의 해시값을 자체에 포함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특정 난이도 하에서 목표한 값을 찾는 복잡한 수학적 연산을 필요로 한다. 이는 상당한 작업 부담이 수반되므로 실패하지 않는 블록들을 임의로 생성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연산을 반복 수행함으로써 해당 작업들에 참여했음을 증명하는 방식의 알고리즘(proof-of-work)이 블록을 제약적으로 현실화하며, 이렇게 블록을 증첩된 사슬로 유지하는 '일'에의 참여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일정량의 코인이 '생산'(채굴)된다. 지금의 작동망은 교환의 유효성을 승인하고 통제하는 중앙 기능을 상정하지 않는 분절적 체계임을 기억하자. 이 경우 기록된 증여/수령 사실의 진릿값을 판단할 주체는 다중 자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판단의 근거 역시 해당 사실관계로의 다중적 참여다. 즉, 무제약적 연결성 가운데 어떤 블록이 있게 될 것인지에 관한 다수의 입증과 공유가 어떤 트랜잭션을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지에 관한 결정과 연동되어 있다.

17) 익명 네트워크를 조건으로 활성화되는 비당사자적 참여("익명적 참여")의 구체화된 양상은 이길호(2019) 참조. 더불어, 이것이 우리 안의 '외부실천' 또는 실천적 존재론으로 확장할 가능성에 관해 이길호(2023) 참조.

$$(i) \text{Block}^{m^{-1}}(T_x^{n^{-1}}(A, B), \dots) \rightsquigarrow \text{Block}^m(T_x^n(B, C), \dots) \rightsquigarrow \text{Block}^{m+k}(T_x^{n+1}(C, D), \dots)$$

(+) $\updownarrow$

$$(ii) M_N \rightarrow [F_N \rightarrow T_x \rightarrow F_N] \rightarrow M_N$$

[그림 9] 내부교환과 외부교환의 분할·중첩  
 ‘생산’은 교환의 표현이자 참여의 양태다.

B가 A와의 관계로 있게 되는 것은 그것이 그러한 것이게 하는, 말하자면 그 밖의 대안을 ‘옳지 않은’ 것으로 제약하며 A-B의 가상적 결연을 현실화하는 ‘허구 힘’을 통해서다. 그것은 블록들의 체인으로서 ‘외부교환’과 트랜잭션들의 체인으로서 ‘내부교환’을 중첩시키는(확정된 블록들에 속하게 함으로써 또한 트랜잭션들을 결정하는) 논리·실천 형식이 마련하는 상황이자, 모든 교환을 앞선 교환의 ‘이미-변형’으로 있게 하는 참여의 기표가 된다. 존재하는 것은 ‘전체’도 ‘부분’도, ‘개체’도 ‘집단’도 아니고, 외부화와 내부화의 교차하는 관계들(관계들의 관계들)이다. 이로써 개별 블록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부분들(트랜잭션), 다시 그에 속한 짝 부분들(증여자/수령자)이 증여 흐름으로 하나씩 ‘밀려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그림 9-(i)]. 이런 교차배열 시퀀스는 비당사자적 참여자들로 개입하는 타자성의 조우를 통해 존재의 유효성을 ‘익명으로’ 강화 확장한다. 동시에, 블록체인을 그러한 것으로 지속시키는 작업에 참여하는 과정이 또한 교환으로 실천되면서[그림 9-(ii)], 코인을 생성해 참여자들에 재증여한다. 즉, 교환의 형태가 내용을 생산하며, 교환이 생산의 조건이 된다.

교환의 존재 증명과 참여 증명이 얽히는 지금의 익명적 연결들에서, 증명에 투입된 작업량(시간과 연산량)은 한번 생성되고 검증된 블록의 인위적 왜곡을 어렵게 만든다. 교환 참여자는 자신이 참여할 교환의 익명적 부분을 스스로 산출하면서 그것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고, 블록이 연쇄적 사슬을 이루는 만큼 블록에 기입된 증여/수령 사실을 변경하려면 연결된 모든 교환 사실(즉, 존재와 참여의 사실)에 대해 재연산을 수반해야 한다. 이런 상호 얽힘의 다중체 형상은 국소적 수준에서의 위변조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존재가 타

자들의 체인으로 성립하는 가운데 익명적 참여가 교환을 ‘투명하게’ 하는 이 같은 도치는 교환이 생산에, 증여가 소유에 선행하는 도치와 더불어 —그러나 이때의 ‘교환’은 상품관계적 교환주의와 차이화하며, ‘소유’는 대상 개체보다 다중적 관계의 소유다— 지금의 네트워크를 타자성의 체계로 가시화한다. 그것은 관점들의 교환과 이미-변형의 배치를 조건으로 발현하는 역형상이다.

## V. 결론: 영속적 비평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그 작동과 존재 자체가 관점들의 변형-교환(change-exchange)이다. 라투르(Latour, 2005, 129-131) 식으로 표현하면, 네트워크는 ‘사물’이라기보다(모든 것이 네트워크로서 기술될 수 있으므로) 어떤 ‘관점’에 가깝다. 즉, 그것은 그에 속하는 사물들을 이미 변형된 양태로 있게 하는 차이의 형식(“차이를 만드는 차이”, Bateson, 2000, 459)이다. 관점으로서의 네트워크는 또한 다른 네트워크-관점과의 차이로 있으며, 그 차이의 정도로서 실재적이다. 이 글은 그런 관점들의 차이 형식이 익명 네트워크로 전개되면서 기존 관점과 다른 사물의 형상이 역발명되는 지점을 드러내려 했다.

‘익명적 교환’이라는 범주는 개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아직까지 탐구된 적이 많지 않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존재와 작동은 새로운 가능성을 기존 담론공간 속에 던져넣는 듯하다. 개별 코인은 외재적 시점에서 거래 대상으로 (만) 관찰되더라도 내적 작동에서는 다음 증여를 통해 앞선 수령의 사실을 확인하는 교차배열의 중첩으로 있으며, 이런 존재 형태는 관계들을 집합화하는 동시에 개체들(개인, 계정, 화폐)을 다중화한다. 이는 익명화의 작동지점과 강도를 다르게 펼치면서 전통적 금융 모델과의 차이로 빠져나간다.

기존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거래 당사자와, 해당 관계 바깥에서 이들을 ‘당사자’로 식별하는 —거래 자격을 확인하면서 거래를 보증하는— 외재적 매개항이 교환을 성립시키며, 그 식별된 정보는 다른 거래자들(비당사자들)에게



접근이 제한된다. 가능한 차이화의 경로는 역으로 모든 증여/수령 사실을 공개하되 ‘거래’와 ‘당사자’의 연결점을 차단하는 것이다. 개별 트랜잭션의 사실은 당사자가 아닌 내재적 타자들에 분산 공유된다. 한편으로, 개별 트랜잭션에 속하는 참여자뿐 아니라 그것을 트랜잭션으로 소급 입증하는 분산된 참여자 역시 정체성(동일성) 확인에 따른 ‘개인적’ 양태로 식별·재현되지 않도록 익명화한다.

이런 형태의 식별 없는 교환은 참여 노드를 개체나 전체로서가 아닌, “변형 속에 차이들이 전승되는 경로”(ibid, 318)처럼 있게 한다. “베이트슨의 지팡이”로도 알려진 이 관점의 전환은 ‘개체의 끝과 시작이 어디인가’라는 물음으로부터 연결성 자체의 행위자성, 정확히는 차이의 다중적 경로들이 발현하는 다른 체계성에 관한 확장적 개념화에 다다른다. 여기서 “지팡이”가 예기하는 것은 연결성을 개체의 개체에 대한 ‘관계 짓기’로 상상하는 개체론적 인식의 반대편 가장자리다. 그것은 관계에 선행하는 사물이 자기 동일성을 유지한 채 관계 맺게 하는 외재적 매개항이 아니라, 선행하는 관계 속에 사물을 ‘자신과의 차이’로 만드는 변형적 흐름의 경로에 가깝다.<sup>18)</sup> 이는 곧 개별체를 다중체의 형상으로 개념화하는 일이다.

이렇듯 개체를 ‘변형의 흐름들’(관점들의 교환을 조건으로 하는 이미-변형들)로 접근할 때, 비트코인이라는 차이의 경로들은 화폐의 문제를 다시 사유하게 한다. 그것은 이미 상품이나 거래의 범주를 초과해 있다. 코인의 ‘생산’은 실제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과정 자체다. 개별 블록은 특정 시간상의 교환 사실을 기록한 장부와 같고 매 순간 이전 모든 교환 사실의

18) 이 전도된 관점에서는 개체-자아에 대해 미리 분리된 개체-대상이 있다기보다, 이미 확장인 시퀀스(거리-지팡이-사람...)를 바탕으로 하는 관점들의 교환이 있을 뿐이다. 사물의 경계나 윤곽은 이런 잠재적 경로의 제약적 현실화이며, 관찰하는 상황에 따라 ‘관련된’ 짝집합들로 재발견돼야 한다(ibid, 465). 이는 베이트슨(Bateson, 1958)이 뉴기니 이아트물에서 분산적 ‘네트워크’의 형상으로 발견한 리즘-체계의 이미지와 겹친다. 이 분할-중첩의 다른 체계는 수렴-위계적 체계와의 차이로 실재적이다. 쿤(Kohn, 2013)이 지적했듯, 그것은 ‘스핑크스의 지팡이’가 지시하는 전통적 인간성 규정을 비인간 관계를 포함하는 연결성들로 확장·변형하는 것이기도 하다.

접혀진 주름들을 기입한 채 교환된다. 부분적 교환들이 언제나 다른 부분적 교환들과 접속해 있게 함으로써, 모든 부분적 참여자는 당사자가 아닌 채로 그 교환 사실까지 공유하게 된다. 네트워크를 ‘전체로서’ 이는 외재적 종합의 관찰 기능을 상정하지 않고도 교환이 유효한 형태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때 검증 확정은 부분적 참여자들 스스로 블록을 만드는 과정으로 수행되며, 여기서 코인의 일정량이 생성된다(참여자에 재증여된다). 말하자면 부분적 연결들을 교환하는 효과로서 비트코인-네트워크가 자기생산한다. 결국 비트코인 교환은 ‘참여 가능한’ 다중채-경로들의 발생·유지 작동이다.

교환과 참여의 경로로서 화폐라는 개념화는 생산이 교환의 한 양태로 내재화되는 상황으로 발현한다. 국가가 거래관계 바깥에서 생산한 화폐가 개별 거래의 매개물로 교환되는 방식과 달리, 개별 교환의 연쇄 자체가 교환될 코인을 ‘만들어’ 낸다. 기존 생산 패러다임에 일정하게 역행하는 이런 교환-생산의 흐름은 작동상 선물-교환 형태에 중첩한다. A-B의 관계(트랜잭션)는 그것을 교환으로 성립시키는 B-C의 보충적 개입(블록 생성)을 요하며, 짝결합의 짝결합(블록체인)은 기존에 없던 코인을 그 관계 집합 내에 도입하면서 코인의 크기와, 또한 관계의 크기를 증폭한다. ‘증식하는 힘’으로서(마치 하우와 같이) 이런 삼자적 결합은 증여-수령-재증여의 선물-교환 형식으로 작동하되, 내적 작동망에서 일시적으로 식별되는 증여/수령의 지점들이 동일한 자리로 고정되지 않게 한다. 즉, 트랜잭션마다 새로운 쉼표들을 재생성하는 형태로 있으면서 동일자의 소유관계로 재현되는 연결을 잘라낸다. 기존 관계를 숨기고 다른 관계를 가시화하는(예기하고 동시에 제거하는) 이런 작동은 개체의 식별·명명을 회피하는 교차배열적 알고리즘을 통해, 화폐교환을 익명화한다.

지금의 ‘익명적 화폐’는 그 내재적 타자성과 식별 불가능성으로 인해, 기존 화폐교환 체계에 교란을 유발한다. 정확히는 체계의 관점에서 ‘교란으로’ 관찰된다. 그것은 경제를 체계로 작동하게 하는 형식들에 ‘비정상성’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루만(Luhmann, 1997)에 따르면, 경제체계를 성립시키는 조건은 법과 경제 사이의 구조적 연결을 마련하는 두 형식(소유권 및 계약)이다.

경제체계는 소유와 계약 이외의 다른 잠재적 차이들을 동류화한 채, 해당 상태와 관련된 특수한 차이 형식을 안정화하는 법적 제도 위에서 있다. 즉, 자기 관점으로 재현되지 않는 연결성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면서(복잡성을 감축하면서) 자신과의 관계를 재생산한다.<sup>19)</sup> 여기서 교환은 소유의 이전을 실현하는 계약(‘거래’)의 의미 차원으로 정향돼 있다. 그 밖의 가능성 형태는 결국의 거래-교환적 속성화로 수렴되거나, 비교환(non-exchange)으로 재현될 것이다.

거래-교환도, 비교환도 아닌 익명-교환(anon-exchange)은 소유권과 계약으로 표상되는 구조적 연결성에 개입하면서 기존 관점의 화폐와 다른 화폐를 있게 하고, 경제체계에 온전히 속하지 않게 한다. 그 ‘이상한’ 화폐교환은 거래 이전/이후의 소유/비소유 상태를 식별하는 기능에 간섭함으로써, 계약으로서의 교환(contract-exchange)과 비평형적인 “변형으로서의 교환(change-exchange)” (Viveiros de Castro, 2014, 218)의 타자성을 끌어당긴다. 즉, 체계가 처리해야 하는 복잡성이 증폭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변수가 늘어나는 문제라기보다, 복잡성을 감축하는 체계의 기능이 오히려 체계의 교란을 상승시키는 조건으로 역 실행되는 차원의 문제다. 익명적 화폐는 체계의 통제-관리를 회피하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체계가 ‘만들어 낸’ 비체계성인 까닭이다. 이는 지금의 비평형적 교환에 대해 체계가 표출하는 두 가지 반응 속에 극명하게 드러난다.

첫째, 경제체계는 익명적 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현실화폐에 대해서 ‘가상화폐’로 규정하며, 가상성에 관한 엄밀한 개념화와 무관하게 ‘비실재성’의 의미 차원과 동일시된다. “디지털 서명의 연쇄로 이뤄진 화폐”라는 것은 화폐를 둘러싼 기존 상징 체계에 어떤 공백을 도입하는데, 금 자체의 가치와 같은 실물 기반(또는 그에 상응하는 상징값)이 없다는 사실이 강조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이는 교환의 실질적 작동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

19) 체계는 자신의 환경(비체계 또는 타-체계)과 소통하지 않는다(ibid, 726). 환경에 대한 자신의 인식(자기화한 차이)과 소통한다. 즉, 소통 불가능한 차이들(자신과의 차이화)을 ‘없는’ 셈 치거나 ‘비정상’으로 재현하며, 그러한 연결성의 차단을 통해서만 ‘체계적일’ 수 있다. 이 점에서 체계는 환경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를 일반화하는 것)이다(ibid, 743).

지 않는다. 그것이 ‘없음의 있음’으로, 이마-교환임의 기표로 개입해 있다면 말이다. 다만 교환이 축적(소유)의 기능에 한정될 경우, 실물 가치를 ‘결여한’ 대상성이 부각되며 가상화폐의 ‘가치 없음’을 재규정한다. 경제체제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블록체인의 ‘기술’과의 분리를 시도하거나, 또는 투자 대상으로서(만) 통용되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이다. 그러나 오직 현실화폐 축적을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묶어두는 방식의 체계화는, 그런 이유로 이제 투기의 가능성을 함께 불러온다.

둘째, 경제체제는 익명적 화폐를 새로운 화폐로 인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소유와 계약의 재현 상태에 관한 재규정이 얼마간 요청되는데, 이것은 경제체제를 성립시키는 조건이 되는 그 형식들이다. 따라서 익명적 화폐를 인정한다면, 제도 내로 합법화해서 포섭하려는 의도와 별개로 체계 자신의 변형을 유발한다. 무엇보다, 중앙기관을 매개로 하는 계약-소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익명적 화폐는 중앙이 관리하는 화폐의 하위범주로 포위되는 순간, 바로 그 체계화를 (다시 그것을 빠져나가는) 익명화의 조건으로 역발명할 것이다. 화폐로서의 ‘가치 있음’을 체계가 승인한 결과로, 체계의 기능에 변형을 일으키는 다른 익명적 화폐의 가능성 형태가 (기존 체계와 지속적인 강도의 차이를 이룬 채) 항상 개입하는 것이다. 첫 번째 상황에서 투기가 활성화되며 체계가 온전히 처리하지 못하는 바깥을 남기게 된다면, 두 번째 상황은 체계화가 진행될수록 오히려 체계가 처리하지 못하는 안쪽을 동시에 만들어 낸다. 양자 모두 체계는 자신의 역설과 조우한다.

결국 지금의 익명적 형상은 체계화와 반체계화를 함께 중첩시키면서, 동일자로 명명될 수 없는 다중성을 가시화한다. 기존 네트워크-관점은 이를 비화폐(non-currency)로 규정하며 배제하거나 익숙한 화폐 유형으로 재포섭하려 들겠지만, 무엇으로 고정되든 간에 바로 그러한 재현이 그것을 벗어나는(자신과 차이화하는) 또 다른 관점을 끌어낸다. 소유의 이전을 관점의 교환으로, 계약-교환을 변형-교환으로 도치하는 ‘익명-교환’은 그 자신이 거래-교환과 선물-교환의 교차하는 흐름들로 빠져나간다. 하나의 대상화에 온전히 포위되지

않는 이 불확정성은 양립 불가능한 관점 너머의 비일관적 공백으로 남더라도, 단지 모호성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체계 한복판에 역설적 타자성을 불러온다. 즉, 체계가 ‘체계화하지 못하는 정도’로서의 영속적 차이화를 동일성의 전치된 내부에 떠다니게 한다. 전통적 의미의 화폐도, 비화폐도 아닌 그 익명-화폐(anon-currency)는 양자 사이의 내재적 비식별 지대를 자신이 존재할(익명적으로 교환될) 장소로 생성하면서, 반(反/半)체계적 변형의 경로들로 확장하고 있다.

**【주제어】** 익명-화폐, 익명-교환, 선물-교환, 관점들의 변형-교환, 블록체인 다중체

[참고문헌]

- 권창규 (2021). 암호화폐 투자의 자기경영 서사: 투자 경험 텍스트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83, 109-149.
- 김흥기 (2014).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비트코인 거래를 위주로. *증권법연구*, 15(3), 377-431.
- 이길호 (2019). 유(類)적 익명: 어나니머스와 익명적 참여의 문제. *한국문화인류학*, 52(2), 145-190.
- \_\_\_\_\_ (2020). 익명적 교환: 선물-교환 형식의 분할, 확장, 변형. *한국문화인류학*, 53(3), 385-443.
- \_\_\_\_\_ (2021). 익명의 가장자리에서: 익명-장소와 익명-되기,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 *비교문화연구*, 27(1), 239-297.
- \_\_\_\_\_ (2023). 익명적인 연결들: 타자-되기에 관한 존재론적 접근. *비교문화연구*, 29(2), 127-168.
- 이병태 (2018). 화폐의 탈육화와 자본의 현재성: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본 가상화폐의 함의. *시대와 철학*, 29(4), 71-100.
- 이승철 (2019). 불가능한 증여, 기생의 사회: 자크 데리다와 미셸 세르의 상호성 비판. *비교문화연구*, 25(2), 191-229.
- 이향우 (2018). 블록체인의 디지털 민주주의: 자유지상주의를 넘어 커먼주의로. *경제와 사회*, 120, 313-345.
- Antonopoulos, A. M. (2017). *Mastering Bitcoin: Programming the Open Blockchain* (2nd ed.). Sebastopol, CA: O'Reilly Media.
- Bateson, G. (1958). *Naven* (2nd ed.).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0). *Steps to an Ecology of Mind: Collected Essays in Anthropology, Psychiatry, Evolution and Epistemology*.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Bergman, M. K. (2001). The deep web: surfacing hidden value. *Journal of Electronic Publishing*, 7(1), 1-17.
- Campbell-Verduyn, M. ed. (2018). *Bitcoin and Beyond: Cryptocurrencies, Blockchains, and Global*. London: Routledge.
- Deleuze, G. & Guattari, F. (1972). *L'Anti-Edipe: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Paris: Minuit.
- \_\_\_\_\_ (1980).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Paris: Minuit.
- Dingledine, R., Mathewson, N., & Syverson, P. F. (2004). *Tor: the second-generation*

- onion router. USENIX Security Symposium, 4, 303-320.
- Dodd, N. (2014). *The Social Life of Mone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ell, A. (1998). *Art and Agency: An Anthropological Theory*. Oxford: Clarendon Press.
- Gregory, C. (1982). *Gifts and Commodities*. London: Academic Press.
- Kohn, E. (2013). *How Forests Think: Toward an Anthropology Beyond the Human*. Berkeley, CA: Univ. of California Press.
- Latour, B. (2005).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évi-Strauss, C. (1950). Introduction à l'œuvre de Marcel Mauss. In Mauss, M. *Sociologie et Anthropologie*. Paris: PUF.
- \_\_\_\_\_(1966). *Mythologiques II: Du miel aux cendres*. Paris: Plon.
- \_\_\_\_\_(1967). *Les Structures Élémentaires de la Parenté* (2<sup>e</sup> ed.). La Haye: Mouton.
- \_\_\_\_\_(1971). *Mythologiques IV: L'homme nu*. Paris: Plon.
- Luhmann, N. (1997). *Das Recht der Gesellschaft*. 윤재양 옮김 (2014). *사회의 법*. 서울: 새물결.
- Malinowski, B. (1922). *Argonauts of the Western Pacific*. London: G. Routledge & Sons.
- Mauss, M. (1902). *A General Theory of Magic*. Brain, R. tr. (2001). London: Routledge.
- \_\_\_\_\_(1925). *The Gift: The Form and Reason for Exchange in Archaic Societies*. Halls, W. D. tr. (2002). London: Routledge.
- \_\_\_\_\_(1938). Une Catégorie de l'esprit humain: la notion de personne, celle de "moi." *The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68, 263 - 281.
- Munn, N. (1992). *The Fame of Gawa: A Symbolic Study of Value Transformation in a Massim (Papua New Guinea) Society*.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Nakamoto, S. (2008).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Available: <https://bitcoin.org/bitcoin.pdf>
- Sahlins, M. (1972). *Stone Age Economics*. Chicago: Aldine-Atherton.
- Strathern, M. (1988). *The Gender of the Gift: Problems with Women and Problems with Society in Melanesia*. Berkeley, CA: Univ. of California Press.
- \_\_\_\_\_(1995). The nice thing about culture is that everyone has it. In Strathern, M. ed. *Shifting Contexts: Transformations in Anthropological Knowledge*. London: Routledge.
- \_\_\_\_\_(2004). *Partial Connections* (updated ed.). 차은정 옮김 (2019). *부분적인 연결들*. 파주: 오월의봄.

- Viveiros de Castro, E. (2004). Exchanging perspectives: the transformation of objects into subjects in Amerindian ontologies. *Common Knowledge*, 10(3), 463-484.
- \_\_\_\_\_(2014). *Cannibal Metaphysics: For a Post-Structural Anthropology*.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 Wagner, R. (1978). *Lethal Speech: Daribi Myth as Symbolic Obvia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_(1986). *Symbols that Stand for Themselve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_\_\_\_\_(1991). The fractal person. In Strathern, M. & Godelier, M. eds. *Big Men and Great Me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iner, A. (1992). *Inalienable Possessions: The Paradox of Keeping-While-Giving*. Berkeley, CA: Univ. of California Press.



[국문초록]

네트워크는 사물이 아니라 관점이다. 즉, 그에 속하는 사물을 이미 변형된 양태로 있게 하는 차이의 형식이다. 이 글은 익명 네트워크라는 타자성의 형식을 통해 기존 관점과 다른 사물의 형상이 역발명되는 지점을 탐색한다. 익명 네트워크는 구성주의적 네트워크-관점과의 차이로 있으며, 그 차이의 정도로서 실재적이다. 명명·식별 체계에서 빠져나감으로써 재현 대상으로 수렴되기 힘든 한편, 바로 그런 인식의 한계를 유발하도록 존재하는 까닭이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익명적/구성적 관점 차이의 간극과 교환을 구체화하는 사례다. 외부 시점에서 거래관계로 관찰되더라도 내재적 작동에서는 이를 벗어나는 변형태로 있으며, 거래-교환의 한복판에 다른 교환을 중첩시킨다. 블록체인의 기본구조들은 타자성의 얽힘과 소유의 불확정성을 조건으로 하는 ‘익명-교환(anon-exchange)’이 작동 중임을 보여준다.

등가교환도 비교환도 아닌 그 낯선 양태는 상품관계적 이데올로기에 토대를 두는 교환 담론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지점들을 남기며, 인류학의 주요 관심이 되어온 선물-교환 형식과 부분적 연결을 이룬다. 여기서 선물-교환은 호혜성의 일반 원리로 모두 설명되거나 단지 비시장적 교환양식으로 한정된다기보다, 어떤 사건적 조건들 속에서 지금 여기의 교환 상황에 현실적으로 교차하는 개입의 형식이 된다. 이 글은 교환의 비평형적 다중성을 검토하고 확장적으로 재정의함으로써,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관점들의 교환’ 및 ‘타자성의 사슬’로 개념화한다. 전통적 화폐도 비화폐도 아닌 ‘익명-화폐(anon-currency)’의 형상을 통해, 이미-변형(ex-change)인 교환으로서 그 영속적 차이화의 흐름이 소유-계약의 기존 재현 상태에 역설적 타자성을 불러오는 경로를 살핀다.

[Abstract]

## Anon–Currency – Exchange of Perspectives and Chain of Alterity

Lee, Gilho (Yonsei University)

A network is not a thing but a perspective; the different associations of the thing make it differ from itself. This study explores the plane on which the anonymous network, as the form of such an immanent alterity, redefines the concept of entity and counter-invents the figure of thing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networks or perspectives. The anonymous network is real, as is the difference from the constructivist network/perspective; it escapes the objectification of constructive nomination and discernment, while it operates as what should be subtracted to provoke the very limits of representation. The Bitcoin network is an example that embodies such a difference of intensity and exchange of perspectives. Even though it would be observed only as a commodity form from the outside, it exists from the perspective of immanence, as a transformation that defies the transactional relationship, and even as a superposition of both states, viz., an alter-exchange at the core of a transaction. The elementary structures of blockchain prescribe an "anon-exchange," conditioned by the entanglement of keeping-while-giving and the uncertainty of possession. This strange kind of exchange is linked to the form of gift exchange: the multiplicity in disequilibrium that is neither equivalent exchange nor non-exchange. With an attempt to extend the interpretation of gift exchange, the present article proposes a conceptualization of blockchain as a "change-exchange" of perspectives. It examines the pathways in which "anon-currency" as perspectival transformation introduces paradoxical alterity into the representation of ownership and contract.

**[Keywords]** anon–currency, anon–exchange, gift–exchange, change–exchange  
of perspectives, blockchain as multiplicity

논문투고일: 2024년 07월 11일 / 논문심사일: 2024년 08월 03일 / 게재확정일: 2024년 08월 27일

【저자연락처】 [gilho21@gmail.com](mailto:gilho21@gmail.com)